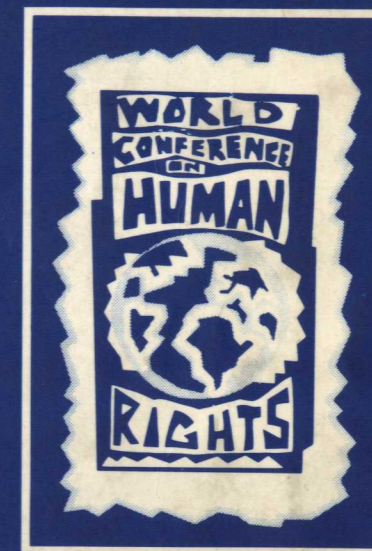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Ic1.1.3

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



93

'93 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



VIENNA, AUSTRIA
JUNE 1993



UNITED NATIONS

HUMAN RIGHTS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Korea NGO's Network for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93 유엔 세계인권대회 자료집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Korea NGO's Network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발간사

1993년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계인권대회가 열렸다. 1968년 테헤란에서 개최된 이래 25년만에 열렸던 이번 세계인권대회는 유엔이 주최하는 인권 분야의회의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서 냉전시대 이후의 인권문제에 관해 논의, 토의하고 점검하면서 새롭게 펼쳐지는 세계질서 속에서 인권을 향상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개최된 것이었다. 세계인권대회는 전세계의 정부대표, 유엔의 전문기구, 인권관련 전문기구의 대표, 각국의 인권관련 민간단체까지도 참가하는 대회이다.

1992년 말경 유엔 세계인권대회 개최소식을 접한 우리나라의 인권관련 단체는 세계인권대회에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993년 3월 12일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KONUCH)」를 발족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간단체회의의 참가와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KONUCH는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방콕에서 열렸던 아·태지역 민간단체회의에 7인을 파견하고,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개최되었던 49개국 정부대표와 100여개의 민간단체들이 참가한 아·태지역회의도 참가하였다.

비엔나에서의 세계인권대회는 기대와 달리 정부대표들의 인권에 관한 소극적 태도로 인권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혹평과 함께 실패로 끝난 본회의와는 달리 같은 기간에 있었던 민간단체회의(NGO Forum)와 인권관련 민간단체들의 다채로운 행사는 주목을 받았다. 비록 준비과정이 충분하지 못했고 세계인권대회에 관한 정보가 빈약한 속에서 참가한 KONUCH였지만 민간단체 포럼의 행사등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한국의 인권의 현실에 관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집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법률에 관한 심포지엄”을 실질적으로 KONUCH가 주관하여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의 두드러진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과 노력은 우리의 인권현실 및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해외의 인권단체들에게 조직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해외 인권단체들과의 친교와 연대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세계의 인권단체들의 인권운동경향, 각종인권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에 관해 생생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대회는 우리의 인권에 관한 좁은 시야를 깨뜨리고 인권문제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간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피흘리는 싸움을 해왔다. 우리에게는 그 싸움이 갖는 인권적 의미를 생각하기 앞서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서 다가왔고 원초적이고 본능적으로 대처하기에 바빴다. 그런 우리의 싸움은 세계적 인권운동과의 관련성에 관해 미처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절박했고 한국의 인권상황은 참혹하기만 했던 것은 사실이다.

KONUCH는 비록 충분히 준비되고 내실있는 활동으로 충분한 성과와 결실을 맺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번 세계대회의 참가는 대단히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며 우리 인권운동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인권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하고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냉전의 시대가 남기고간 상처는 깊지만 하고 쉽게 치료되지 않은 채 더 많은 인권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보았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민족문제, 인종, 종족, 개발과 저개발의 문제, 정치적 갈등 등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더욱 심각하게 인간의 기본권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첨예하게 중첩된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최소한 인권문제에 관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하나, 우리가 경험했던 인권의 문제에 빚대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문제의 해결의 책임의 짐은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 자료집은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자료집은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와 활동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 국제 인권 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채워가는 데 작은 도움과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동안 공대위의 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적 노력을 기울였던 천정배 집행위원장과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 노태훈 간사, 그리고 이대훈씨, 장소영씨 등 함께 했고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국내의 단체와 모든 실무자들, 그리고 특별히 비엔나대회 현장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해외 한청련 회원과 교포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1994. 1. 28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홍성우

자료집을 내면서

-자료집 이용 방법-

한국인권운동이 지난 92년말에 유엔에서 주최하는 세계인권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공대위를 구성하고 활동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실로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93년 4월 방콕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의 참가, 제4차 준비회의의 참가, 6월 비엔나 대회에의 참가. 이 과정속에서 얻어진 정보나 다른나라의 많은 인권운동가들과의 교류등에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들은 이제껏 각 단체별로 아주 제한적이고 단절적으로 수행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국제연대에 대한 인식의 폭과 넓이를 확대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미약한 국제연대의 경험과 역량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준비-공동의참가,실천을 위해 구성된 공대위의 구성은 국내적으로도 큰 의의를 갖는 것이며, 국제회의 현장에서도 외국의 민간단체들에게도 크나큰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운동영역에서 상당한 인력과 재정을 사용하면서 얻어낸 소중한 경험을 공대위에 참가하지 않았던 제 인권단체 그리고 국제연대를 수행하고 있는 여타의 단체들과 조금이나마 공유하려 하는 것입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다녀온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자료집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제서야 만들어 내는 죄송함을 표하면서 공대위 참가단체들의 노력을 모아 <93 유엔 세계인권대회>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자료집은 이후 비슷한 국제대회를 준비할때 쓸모가 있도록 가능한한 준비과정의 관련 자료를 모두 실었으며, 인권대회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시간별로 설명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단지 대회과정에서 제출된 유엔 공식문건이나 타국의 민간단체들의 제안문 등은 그 분량이 너무 많아 별도의 자료집을 만들어 보관키로 하였습니다.

자료집은 총 6부로 구성하여,

- 1부는 세계인권대회의 개요와 관련 자료를 실었으며,
- 2부는 공대위결성과정을 알수있는 자료를 실었으며,
- 3부는 93년 4월에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준비회의 관련으로 민간단체회의, 정부간회의, 공대위의 활동을 담고 민간단체 선언과 정부간선언을 번역하여 실었으며,

4부는 93년 6월의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과정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실었으며
 공대위의 준비과정, 현지에서의 활동내용과 일지, 민간단체회의와 정부간 본회의의
 개요와 관련자료 그리고 최종선언문을 번역하여 실었다.

5부는 공대위 참가단체들의 평가서와 언론에 기고한 참관기 중에서 주요한 것을 골라
 실었으며,

6부는 앞에서 담지 못한 주요 자료들로,
 국제사면위의 유엔고등판무관 제안문이나, 국제법률가 회의의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제안, 주요 선언문의 영어 원문, 그리고 유엔 인권기구에 관한 설명의 글을
 실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인권운동 발전의 한 과정에서 나온 이 자료집이 앞으로의 국제연대 활동에
 있어서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차례

발간사/홍성우(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3
자료집을 내면서	5
제 1 부 세계인권대회란	
A. 개 요	11
B. 세계인권대회 준비과정	16
제 2 부 국내인권단체 준비과정(공대위 결성)	
A. 세계인권대회 공대위(준비위) 활동 경과보고	25
B. 초기 사업계획	26
C. 세계인권대회 공대위 연구계획	28
D. 세계인권대회 공대위 조직	30
E.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선언문	32
제 3 부 세계인권대회 아시아지역 준비회의(방콕회의)	
A. 민간단체회의(NGO CONFERENCE 93.3.25-3.28, BANGKOK)	37
B. 아·태지역 정부간회의(93.3.29-4.2, BANGKOK)	41
C.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비정부조직(민간단체)선언(1993.3.27, 방콕)	44
D. 방콕선언(1993.4.2, 방콕)	57
E. 세계인권대회 공대위의 참가	60
*세계인권대회 공대위의 제안 자료집	62
*식민지배 또는 외세강점하의 인권	82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84
제 4 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A. 세계인권대회 공대위 준비활동	89
*토론자료 1 :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권고 및 요구사항	96
*토론자료 2 :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제도 개요	99
*토론자료 3 : 유엔의 활동과 인권제도의 개선방안	106
*토론자료 4 : 인권보호제도와 발전모델에 대한 검토	111
*토론자료 5 : 원주민의 권리, 식민지하의 인권, 세계의 주요 인권상황	120

제 1 부

세계인권대회란

*토론자료 6 :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	130
*토론자료 7 : 국제인권원칙으로 본 한국행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40
*토론자료 8 : 이브라마 팔의 선언문 초안	149
*토론자료 9 : 비엔나 국제 공동활동에 대한 원칙, 향후 국제연대운동에 대한 제안	153
*토론자료 10: 참가자 수첩	155
B.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경과	159
*NGO FORUM 안건 및 일정표	170
C. 세계인권대회 공대위의 활동	181
D.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211
제 5 부 유엔 세계인권대회 평가	
A. 각 인권단체 평가서	237
B. 세계인권대회 참관기	254
제 6 부 별 첨 자 료	
A. 방콕선언(영문:BANGKOK NGO DECLARATION on HUMAN RIGHTS)	271
B. 비엔나 인권단체회의 최종선언문(영문:VIENNA NGO FORUM FINAL DOCUMENTS)	289
C.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영문: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296
D. 한국정부 발표문	
93.4. 4차 준비회의/김삼훈 주제네바 대사(영문)	330
93.6. 비엔나 본회의/한승주 외무장관(영/한)	338
E. 국제사면위의 인권고등판무관 제안문(영/한:THE NEED FOR A UN SPECIAL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A PROPOSAL FROM AMESTY INTERNATIONAL)	348
F. 국제법률가협회의 국제형사사법재판소 설치 제안문(영문: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INTERNATIONAL PENAL COURT)	354
G. 유엔 인권관련 기구표 및 설명	377
H. 유엔의 인권침해 해소절차	384

A. 개 요

1. 배 경

유엔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는 인종, 성, 혹은 종교나 신념으로 인한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유엔헌장에 명시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엔은 설립이후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이 주체가 된 각종 인권규약을 제안하고 조약으로 만들어 시행되도록 해왔다. 그 중요한 예로서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그 선택의정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하여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에 관한 조약, 고문방지조약, 난민의 보호에 관한 조약 등 많은 것이 있다.

유엔의 인권활동에 커다란 전기가 되었던 것은 1968년에 열린 테헤란 대회이다. 유엔이 주관한 인권회의로서는 처음으로 열린 테헤란대회는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렸는데 테헤란 선언과 29개의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유엔총회는 1990년 12월 유엔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세계인권대회(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총회 45/155)에서 유엔총회는 세계인권대회를 여는 것이 유엔과 각 회원국들이 인권을 향상하고 보호하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해온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대회를 중시하면서 비정부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권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유엔 인권보호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을 무시하거나 후퇴시키려는 흐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강조해 오고 있다.

2. 세계인권대회의 목적

유엔총회의 결의에서 밝힌 인권대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세계인권선언이래 인권분야에서 이룩된 진보를 재검토하고 평가하여 그에 대한 장애를 밝혀내고 장애의 진보를 위하여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나. 모든 사람이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발전(개발)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다.

다. 현재의 인권기준 및 인권제도의 시행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라. 인권분야에서 유엔이 사용하는 방법과 기구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마.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향상, 촉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권분야의 유엔활동과 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를 마련한다.

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상과 보호에 관

한 유엔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그밖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권고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인권대회와 연관행사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사실의 폭로보다는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호제도와 인식의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권보호제도상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준비회의가 열렸다. 이 준비회의에는 유엔회원국들과 유엔전문위원들,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정부도 계속 참가해 오고 있다. 준비회의에서는 인권대회를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 사이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열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3. 세계인권대회의 참가자

인권대회에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 정부는 물론, 회원국의 인권기구 대표, 유엔의 전문기구 및 국제기관등이 초청받으며 비정부단체(NGO)들도 참관자격으로 초청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가. 인권 또는 발전과 관련하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을 가진 단체

나. 인권 또는 발전과 관련하여 활동하면서 관련된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 밖의 단체로서 지역국가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단체로서 세계인권대회의 준비회의나 각 지역별 회의에 참가한 단체, 이 때 지역국가들과 사

전협의를 한다는 것은 지역국가들이 그 단체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폐쇄적이고 유엔에 늦게 가입한 우리나라에서, 인권단체들의 경우에는 위의 첫째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자격을 가진 국제단체들의 대표자격을 얻어 참가하거나 두번째 범주에 따라 아시아 지역회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4. 준비상황

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인권센터가 실무 준비를 하고있고 지금까지 세차례의 준비회의가 열렸으며 각 지역별 회의도 열리고 있다. 그동안 준비회의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가능한 한 비정부단체들의 참가를 봉쇄하고 인권의 보편성 대신에 지역 혹은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앞세워 인권에 대한 일국의 독자적 판단을 강조하는 국가들, 특히 아시아 지역 일부 국가들의 노력 때문에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시아지역회의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기로 겨우 조정되었다.

5. 비정부단체의 회의와 행사

가. NGO Forum

유엔 세계인권대회기간 중은 물론 아시아 지역회의 기간 또는 그 직전에 비정부단체들의 회의(NGO Forum)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한 모든 비정부단체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비정부단체들 사이의 의견을 교환하고 인권대회에 대한 대응

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제안문을 채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나. 병행행사

또 정부대표들의 공식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비정부단체들은 다채로운 행사를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토론회, 워크샵, 강연회, 인권자료 전시판매, 연극 노래 등 문화행사, 시가지 행진, 공동집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간단체들의 이 행사야말로 인권옹호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온 세계 여러 나라의 단체들이 종합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개하는 행사로서 여론의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다. 대회의 성격(요약)

이로부터 이번 세계인권대회는 1)정부대표들과 유엔협의자격을 가진 단체들의 공식 세계회의 2)비정부단체들의 별도 회의, 3)비정부단체들의 다채로운 행사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표현해서 명실공히 탈냉전시대를 상징하는 세계적 규모의 「인권대회」라고 할 수 있다.

6. 인권대회와 관련된 쟁점과 전망

유엔인권대회는 본래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인권활동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는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지역 일부국가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유엔 및 국제인권단체들 사이에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극히 높은 실정이다.

아시아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인권대회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논리는 첫째,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개념이 서구의 전통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제3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논리, 둘째, 경제·사회적 권리 또는 발전의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권리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그런데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수탈로 제3세계의 경제·사회발전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선진제국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아예 인권문제는 전적으로 국내문제이므로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가 간섭을 하는 것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유럽국가들과 인권단체들은 기존의 인권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컨대, 유엔에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제안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경우 정부간 지역회의에서는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권대회 자체 혹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중심을 두는 방향을 비판하고 인권단체들의 참여폭을 제한하려는 논리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유엔에 의하여 여러 번 제안·촉구되었던 아시아지역 정부간 인권기구의 설치문제가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개편문제가 주요현안으로 등장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아시아지역 비정부단체들의 회의에서 주된 문제점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추측하기로는 일반적인 인권대회의 주제들 외에 극도의 저발전이 존재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 주민들 및 선주민들의 권리문제, 아시아지역의 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문제, 아시아 일부 국가의 극심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대처하는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하여 유엔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문제가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7. 한국인권단체들의 참가

가. 인권대회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며 새로운 인권 관련 조약을 채택하는 것도 아니다. 이 대회는 유엔과 가맹국들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구와 절차를 강화하여 인권을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회에서는 국내,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부대표들이 많은 발언을 할 것이고 약속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단체들은 우선 자국의 정부에 대하여 그들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부대표가 그러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도록 만들며 그 약속의 이행을 감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 이 대회는 그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인권제도와 활동을 재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하여 흐름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국내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데 국제인권제도와 국제연대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차원은 물론 아시아지역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에 대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

다. 구체적으로 이 대회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1) 유엔의 인권기구와 제도의 내용 및 개편논의에 대한 정보를 얻고 흐름을 파악한다.
- (2) 세계인권단체들의 활동방향을 이해하고 연대활동을 통하여 앞으로 협력체계를 만든다.
- (3) 인권대회를 계기로 국내에서 인권문제와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달성해야 할 과제를 설정한다.

(5) 인권단체들이 공동의 준비과정을 통하여

(4) 인권단체들 사이에 국제연대활동에 대하여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한 인식을 제고하고 운동방식에 대한 모색과 확보하고 국제활동의 경험을 얻는다. 실천을 한다.

<세계인권대회 행사일정>

@ 유엔 세계인권대회(UN World Conference on H.R.) : 6월 14일~25일
이 회의는 유엔 가맹국의 정부대표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회의이나, 인권증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민간단체들도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이제까지 유엔이 전개해온 인권제도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초한 선언문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며, 각국 정부대표와 민간단체들의 발언이 있게 된다.

@ 민간단체 회의(NGO Forum) : 6월 10일~12일
본 회의에 앞서서 전세계에서 모인 민간단체들간의 공동요구와 전략을 모색하는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회의 운영방식, 본 회의에서 행할 민간단체 주요 연설에 대한 조정, 작업팀의 구성, 요구사항 채택, 결의문 채택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작업팀은 1)유엔인권기구와 제도에 대한 평가팀, 2)소수민족과 원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작업팀, 3)여성의 권리를 위한 작업팀, 4)인권과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연구 및 남·북 민간단체간의 연대방안을 위한 작업팀, 5)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 민족·종교적 배타주의에 의한 인권침해와 극복방안 연구팀으로 구성하여 전세계 인권실현을 위한 유용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 민간단체 병행행사(NGO Parellel Activity) : 6월 14일~25일
@ 민간단체 박람회(NGO Fair) : 6월 14일~25일
이 행사들은 본 회의 기간중에 전세계에서 모인 인권 단체들이 주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공동 인식의 확보와 문화교류를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는 1,000여개가 넘는 민간단체들이 공동 혹은 개별적인 형식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이나 주요인권 침해에 대해 다양한 방식과 매체로 호소하게 된다.
특히 기간중인 20일에는 참가자 모두가 각국의 고유한 의상이나 상징물들을 갖고 참가하는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행진"도 계획되어 있다.

B. 세계인권대회 준비과정

1. 45/155 결의문

- 이 결의문은 90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대회를 결정한 결의문입니다.

총회는

국제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명기되어 있는 바, 인종·성·언어 혹은 종교로 인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것이 국제연합의 목적임을 명심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불가분일 뿐 아니라 상호관련이 있으며, 국가는 어느 카테고리의 권리신장과 옹호로써 다른 카테고리의 신장과 옹호의 의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가맹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 및 준수를 국제연합 헌장의 관계 조항에 따라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음을 염두에 두고,

국제연합이 이 목적을 향해 전진해왔다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도 한층 더 전진시키지 않으면 안될 분야가 몇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이제까지의 전진, 남겨진 문제, 그리고 앞길에 가로놓인 새로운 과제를 고려하면서 인권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달성된 성과와 앞으로 할 일을 검토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총회가 사무총장에 대하여, 인권의 신장과 옹호에 관련하여 국제연합이 직면하는 중대한 문제를 최고의 수준에서 다루기 위한 세계인권회의의 소집이 바람직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국 정부, 전문기관, 비정부조직, 인

권에 관련된 국제연합기관의 견해를 구하도록 요청하였던 1989년 12월 15일의 결의 44/156을 상기하여,

이들의 견해를 정리한 사무총장의 보고에 유의하여,

많은 정부, 전문조직, 국제연합기관, 그리고 비정부조직이 세계인권회의의 소집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회의 성공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가 중요하다는 많은 견해도에 유의하여,

세계인권회의의 개최는 국제연합이나 그 가맹국의 인권촉진·옹호활동의 유효성에 커다란 공헌을 할 것임을 확신하여,

<1>1993년에 이하의 목적을 가지고 높은 수준에서 세계인권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한다.

(a)세계인권선언 채택 이래 인권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진 발전을 재검토, 평가하여 이 분야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더욱 더한 발전을 위하여 극복해야 할 장애와 그 방법을 명확히 한다.

(b)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발전과 모든 사람들에 의한 이들 권리의 향유와의 관계를 검토한다.

(c)현재의 인권기준과 여러 문장의 실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검토한다.

(d)국제연합의 인권분야에 있어서의 방법과 기구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e)인권과 기본적 자유존중의 신장, 장려, 감시를 목적으로 한 여러 사업을 통하여 국

제연합의 인권분야에서의 활동과 기구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를 한다.

(f)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 옹호라는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연합 활동에 재정적 및 기타의 자원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를 한다.

<2>세계인권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하되, 이것은 총회의 확립된 관례에 따라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이나 전문기관에 대하여 열려 있으며, 옵저버의 참가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3>준비위원회는 또한 회의의 의안, 일정, 기간, 장소, 참가, 1992년에 행하여질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수준에서의 회합이나 활동, 그리고 바람직한 연구나 그밖의 문서에 관하여 총회에서 검토를 위하여 제안을 할 임무를 질 것을 결정한다.

<4>준비위원회는 제1기 회합에서 의장 1명, 부의장 3명, 보고자 1명으로 이루어지는 의장단을 지리적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선출할 것을 결의한다.

<5>준비위원회는 제1항에서 말한 회의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그리고 제47회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염두에 두면서 회의의 실질적 준비를 행할 것을 지시한다.

<6>준비위원회는 1991년 9월에 제네바에서 5일간의 회합을 가질 것을 결정한다.

<7>1987년 12월 21일의 결의 42/21에 따라, 그리고 총회에서 채택된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의 2년간을 위한 자원의 전 수준과 1992년부터 1993년 사이를 위해 이미 제안되고 합의된 사업 예산사항을 손상함이 없이, 또한 사업예산 섹션23 아래 세워진 여러

사업에 관계없이, 준비과정과 회의 자체는 국제연합의 통상적 예산으로 꾸러지는 것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특히 후발발전도상국의 대표가 준비회합 및 회의 자체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예산외 재원의 기부도 요청한다.

<8>인권위원회에 대하여 회의 개최까지의 회기에 있어서 위 문제에 관하여 준비위원회로 권고를 하도록 요청한다.

<9>인권위원회 의장, 인권전문기관의 의장 또는 지정된 멤버 및 특별보고자나 주제별 보고자, 그리고 작업부회의 의장 또는 지정된 멤버가 준비위원회에 참가할 것을 장려한다.

<10>정부, 전문기관, 여타의 국제기관, 국제연합기관, 지역조직, 인권에 관심을 갖는 비정부조직에 대하여, 준비위원회를 지원하여 회의에 관하여 검토하고, 회의와 그 준비에 관한 권고를 사무총장을 통하여 준비위원회에 제안하여 또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청한다.

<11>사무총장은 위 9항, 10항에 따라 행하여지는 공헌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2>또한 사무총장은 사무국 중에서 회의의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또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준비위원회로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13>준비위원회에 대하여 제46회, 47회 총회에 준비위원회의 작업 경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1/Resolution 217A (3)
2/A/45/564

2. 각 지역준비회의 (아프리카, 중·남미, 아·태지역)

가. 아프리카지역회의

지난 1992년 11월 2일-6일, 아프리카 튀니스에서는 세계인권회의의 준비를 위한 지역회의가 열렸다. 아프리카 42개국외에도 여러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들이 참가하였으며 171개의 NGO가 공식참관하였다. 이중 78%는 아프리카지역에 활동기반을 두고 있었고 나머지 22%는 아프리카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였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자문자격이 있는 NGO는 20%에 불과했다.

이 회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튜니스 선언”은 몇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인권과 개발권은 분리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인권확립은 국내의 효과적인 개발정책 및 국제사회의 공정한 경제관계와 긴밀히 관련되어있다고 밝히고 있다(이 부분에 대한 논쟁점은 남미지역회의에서 명확해지므로 추후 함께 설명). 둘째, 인권의 보편성문제에 대해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인권의 인류보편적인 성격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각 나라의 역사, 문화적 현실과 각 민족의 전통, 가치, 규범들이 무시될 수 없는만큼, 어떠한 류의 기존모델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 부분은 아·태지역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추후 함께 설명). 셋째, 사법부의 독립성은 인권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회의에서 아프리카 NGO들은 기초위원회와 단독회의를 할 기회도 얻었고 또 33개의 NGO들이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발표할 기회도 가졌으나, 이들의 의견은 지역회의 결정안 초안작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아프리카 NGO 연락담당 : Arab Institute of Human Right (AIHRA)

23 Av. Mohieddine Klibi, El Manar 3(?), 1004 Tunis,

Tel:(+216) 1 767 003, Fax:(+216) 1 750 911

나. 중·남미지역회의

지난 1993년 1월 18일-22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는 세계인권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중·남미지역회의가 열렸다. 이회의에는 중·남미 34개국외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들이 참가하였으며(약 600-700명) 172개의 NGO들이 공식참관하였다. 아프리카지역회의와 비슷하게 이중 70%가 중·남미지역에 활동기반을 두고 있었고 나머지 30%가 중·남미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였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자문자격을 갖춘 NGO는 33%에 불과하였다.

중남미의 NGO들은 지역회의의 시작 하루전에 NGO회의를 갖고(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가 주관), 지역회의 의제에 관한 NGO들의 입장을 수렴하였다. 이들은 중남미NGO 전체를 대표하여 단 하나의 공동의견서를 지역회의에 제출하였고 이 문건은 4차 제네바 준비회의와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도 중남미 NGO들의 공동의견서로 고려될 예정이다. 이들 NGO들의 입장은 기초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하여 “정부선언” 초안작성에 여성문제, 원주민문제, 장애인문제등 일부가 반영되었다.

이 지역회의에 참석한 정부대표들은 “정부선언”을 통하여 유엔의 현 인권기구들이 부상하는 인권문제에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유엔상설 인권사무관”

설립에 관한 유엔총회의 제안을 정부간회의로서는 최초로 공식동의하였다. 또 “정부선언”은 “민주화와 자유의 결핍, 면책권, 사법부의 독립성부족, 유엔기구 결의안 수행의지 부족”등이 인권실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대표민주제, 개발, 효과적인 인권실현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유엔 인권관계자들은 아프리카지역과 더불어 중·남미지역은 개발권, 즉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있다고 밝히면서 이 개발권문제는 남북의 국가가 모두 모이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최대의 논쟁점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중·남미 정부측이나, 세계인권회의 공식관계자들은 “개발권과 인권의 갈등”을 남북 국가들간의 문제로 보고 있으나 사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대표와 NGO대표들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 지역회의 개막식에서 중·남미의 고위급 정치인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정치적권리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동서대결의 자리에 남북의 갈등이 들어선 지금, 선진개발국들은 개도국의 인권상황에 일정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타리카 부통령과 외무부장관은 “유럽공동체가 남미 바나나에 부과한 과세”를 비판하고 남미도 “자유무역 국제시장에서 쉽게 활동할 수 있는 국제경제질서가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만약 국제시장에서 활로를 찾을 수 없다면, 빈국들은 적절한 개발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관련지역의 평화유지나 인권수호를 위해 협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자국민의 인권을 불모로 삼은 협박조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중·남미NGO들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관련지역 정부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등)나 의무는 방기한 채, 자국내 문제를 1세계로 전가하는데 더 급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1세계가 3세계에 불리한 국제경제질서를 지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나 3세계 정부와 부유층이 그 책임의 댓가로 1세계로의 특정산물 수출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경제적 요구는 그 이윤이 3세계의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정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중·남미 정부들이 지역회의에서 세계인권회의까지 의식적으로 쟁점화시키려는 “3세계의 개발권”은 일정한 경제적 경향성을 띠고 있으며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있다. CODEHUCA (Commission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in Central America)는 중·남미 정부가 주장하는 “개발권”은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현 개발모델고수를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으며 “개발권”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구조조정정책(SAPs, The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이야말로 중·남미사회의 절대빈곤을 증가시키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며 “인권실현을 어렵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관련정부, 1세계정부,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이 모두 변화되어야 하며 이중에서도 3세계의 일개정부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의 반인권적 성격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차원에서 특별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남미NGO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들은 인권수호투쟁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권실현이 가능한 사회, 즉 사회·경제·정치적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에도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권”문제는 지역회

의를 내용적으로 석권하면서 동시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배제하는데 기여했다고 NGO들은 주장하고 있다. 즉 과거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문제,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정부, 군, 정보기관들에 의한 “정치암살”, “실종” 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다루어졌다. 즉 “개발권”이슈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강조를 통해 “시민, 정치적 권리”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남미 NGO들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인권침해를 자행한 군, 정보기관요원들이 면책권을 누리는 한, 그래서 죄인들이 사회에서 활보하는 한, 사회평화와 민주화는 이룰 수 없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 국제 형사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세계인권회의에 요구하고 있다. 해당국가내의 법제도의 한계를 감안하여 국제인권재판소를 설립하려는 취지는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가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주장하여 왔고 이번 아프리카 지역회의에서도 Egyptian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중·남미 NGO연락담당: Silvia Porras,
General Coordinator CODEHUCA
APJ 189-1002, San Jose, Costa Rica
Tel: (+506) 245970, 250270
Fax: (+506) 342935

라.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태지역회의는 원래 1992년 10월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아·태지역 정부들의 보이콧으로 계속 지연되어 왔다. 이와는 별도로 아·태지역에서는 1991년 12월 자카르타 인권회의가 계획되고 있었으나 1991년 11월 Dili 학살로 취소된 바 있다. 아·태지역회의

가 난항을 겪자, 취소되었던 이 자카르타회의가 유엔인권센터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도하에 “아·태지역 인권워크숍”으로 준비되어 1993년 1월 26일-28일 3일동안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이 자카르타 인권워크숍에는 아·태지역 31개국의 NGO대표들이 참가했다고 하나 이들은 세계인권회의 준비회의에서 결정한 참가원칙보다는 아·태지역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선발, 초청되었다. 예를 들어 국제NGO의 경우에도 AI와 SOS-Torture 등은 초청되고 Asia Watch는 초청받지 못하였다. 아·태지역 정부들은 이 자카르타 워크숍을 통해 세계인권회의 준비를 위한 아·태지역회의를 대신하려고 의도했지만 NGO들은 이러한 의도가 관철되지 않도록 유엔인권기구에 모든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일단 성공하여 오는 3월 29일-4월 2일 방콕에서 아·태지역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NGO회의도 회의시작 바로 전인 3월 27일-28일 열릴 예정이다(국내 인권단체들이 세계인권회의에 공식참가하기 위해서는 이 아·태지역회의에 반드시 공식참가하여야 한다).

아·태지역 NGO 연락담당: Inhured
PO Box 2125, Kathmandu, Nepal
Tel: (+977/1) 419610, Fax: (+977) 1 412538, 226820

앞으로 열릴 아·태지역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태지역 정부들이 세계인권대회에 임하는 자세나 그들의 논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아·태지역 정부들이 모두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중 강경파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입장을 먼저 소개하자면 이들은 “이제까지 인권에 관한 이해는 아시아의 문화와 가치기준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인권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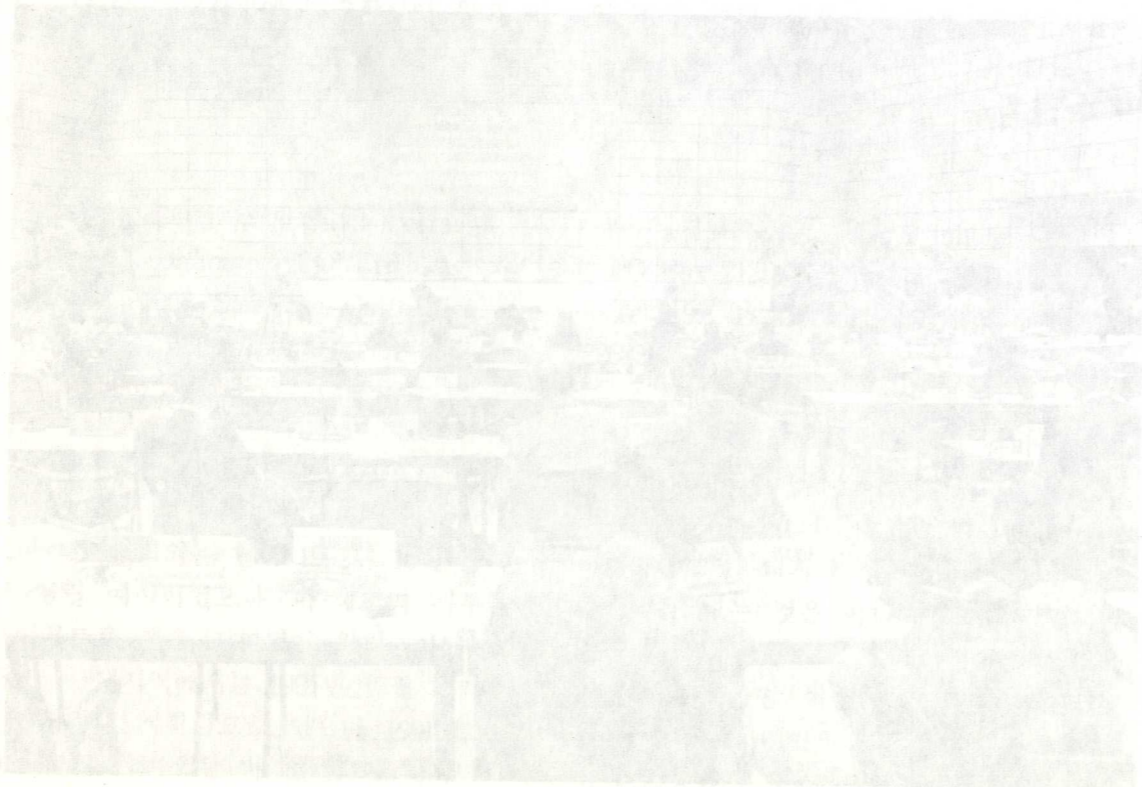
을 지지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들은 또 “인권에 관한 서양의 정의가 개인과 시민적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 동양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동체권리, 규율, 노장자에 대한 경애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부국들이 개도국을 상대로 (인권을 병자하여)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인권규약의 기본정신을 어기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소수파로 남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자유교련 세계총회에서 이들이 취한 공세적인 활동을 소개하자면, 전교조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독일교조와 네델란드교조에 의해서 총회에 제출되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교총은 전전공공하는 교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교사들은 전통적으로 존경받는 사회적 위치에 있다. 서구의 교원노조들이 이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교원노동조합을 가르치려 한다. 이런 태도는 식민지 지배에서 연유한 것에 다름아니며 아시아를 무시라는 처사이다”고 강력발언하여 교총이 제대로 감당못하는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맞받아쳐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들은 압력행사로 “아시아의 단결”을 과시하기도 하였는데, 총회에서 전교조결의안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학살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일교조와 전교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대표들은 회의장을 퇴장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아시아의 단결”, 실제 “아시아지역 정부들의 단결”은 특히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의 성장이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도 도미노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황은 매우 심각하여... (faded text)

... (faded text)



제 2 부

국내인권단체 준비과정 (공대위 결성)

A. 세계인권대회 공대위(준비위) 활동 경과보고

- 1992년 12월 중순, 유엔 세계인권대회 개최에 관한 소식을 접한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에서 한국 인권단체들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준비체계를 갖추기 위해 인권단체들에게 연락을 취함('유엔세계인권대회 공동대응을 위한 제안문' 전달).

- 1993년 1월 7일 민변, 민가협, 기독교(NCC)인권위, 천주교인권위 등 4단체와 서준식씨등이 참석하여 첫 준비회의를 갖고 그동안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고 공동대응에 합의. 이와 동시에 대회참가를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아울러 유럽지역의 우호적인 인사들의 협조를 요청. 발족식 준비를 시작함.

- 이에, 본 공대위가 참여할 세계인권대회 관련 주요회의와 행사를 확정함.

-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 3월 29일 - 4월 2일, 방콕
- 아시아태평양지역 NGO Forum : 3월 25일 - 27일, 방콕
- 유엔 세계인권대회 : 6월 14일 - 25일, 비엔나
- 세계 NGO Forum : 6월 10일 - 12일, 비엔나
- 인권대회 NGO 병행행사 : 6월 14일 - 25일, 비엔나

- 1월-2월, 각 인권단체는 이 일에 대한 실무책임자를 임명하고, 연대기구의 정식발족 이전까지 실무책임자들의 구조인 집행위원회를 두었다. 집행위는 기초적인 조사활동과 연구활동을 전개하며 실무회의를 7회 개최함. 집행위원 3인이 각각 일본과 유럽을 방문,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해외 우호적 단체와의 협력관계 수립함.

- 운영체계를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기획진을 두고 집행위원장에 민변의 천정배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사무실은 강남구 역삼동 소재 조용환 변호사 사무실내에 두기로 함.

- 3월 2일, 6차 집행위에서 집행위원장(내정)과 1차 참여단체를 8개로 확정하고, 대표자회의와 발족식의 구체적일정을 확정함.

- 3월 4일, 8개 인권단체 대표자회의를 세실식당에서 개최하여 본 공대위의 구성과 운영계획시안을 확정하여 실질적인 발족을 갖고, 상임대표에 민변 홍성우 변호사, 집행위원장에 천정배 변호사를 선임함.

- 3월 8일, 7차 집행위는 3월 29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지역회의에 본 공대위가 공식 초청되었음을 확인하고 본회의와 민간단체회의에 6-7명의 대표단을 보내 한국인권단체의 독자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아시아지역 민간단체와 협력관계를 갖기로 함.

B. 초기 사업계획

1. 자료, 정보축적 및 연구 사업

- 향후 국제 연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NGO의 현황과 각 조직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축적.
- 국제적으로 주요한 인권 현황과 타국의 인권상황의 개요 파악.
- U.N 총회를 앞선 국제·국의 NGO의 제안, 준비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 위 제안에 대한 분석과 한국측의 입장 정리(가능한 한국측 제안 내용의 준비도 포함).
- 국제, 국외 NGO와의 사전 교류 및 세계대회 기간중 공동 사업의 모색.
- 국내 인권 상황 보고서 작성.

2. 국내 여론의 확대 사업

- 발족식 및 설명회(3월 12일).
- 세계대회 전후의 보고대회 및 강연회(6월 초, 말)
-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참가단 기자회견(3월 중순)
- 주요 언론, 월간지 기획기사 및 보도교섭 사업(4월부터)
- 소식지, 주요 선전물 배포 작업(발족식 이후부터)
- 세계인권대회 기념 인권보장 촉구 걷기대회(4월 말)
- 국내 인권단체에 의한 인권 현황보고 및 토론회(4월부터)

3. 정부측, 주요 정당에 대한 교섭사업

- 2-3차에 걸친 외무부 인권 대사 면담 및 요구 사항 촉구.
- 각 정당, 사회단체에 세계대회 준비활동 적극 지원 촉구 및 확보..

4 대회 참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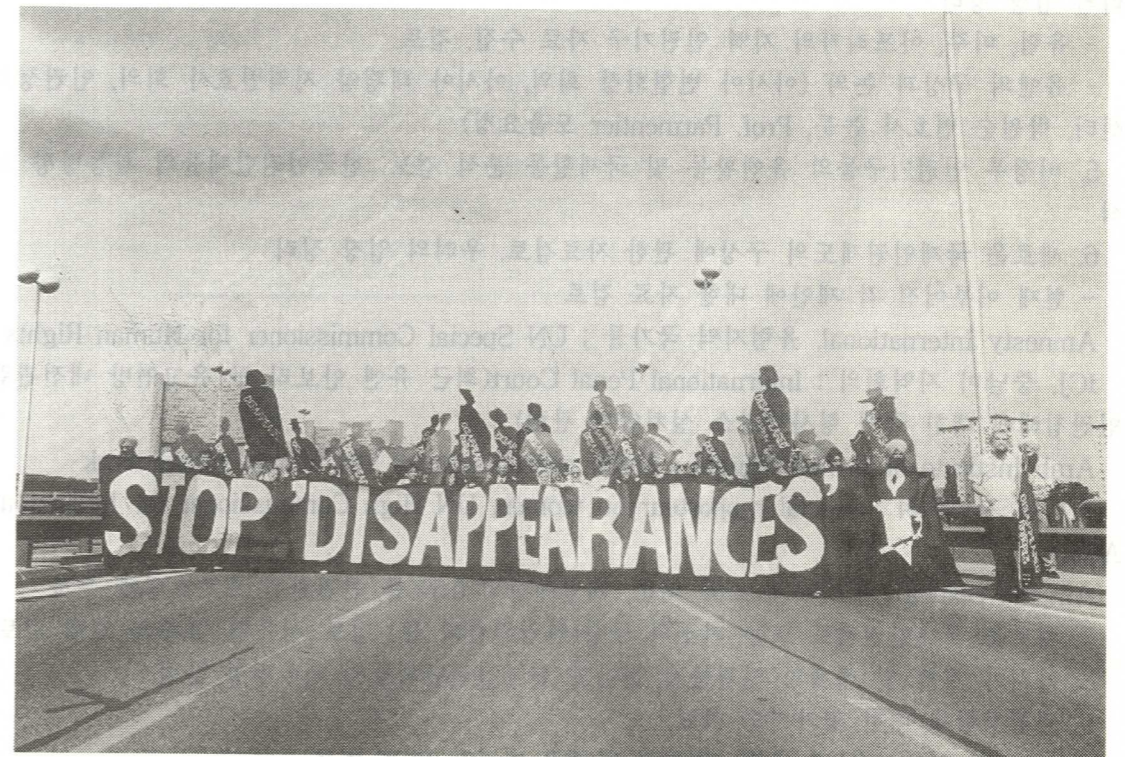
가. 아시아 지역회의

- 한국측 대표단 파견(3/25 - 4/2, 참가자격 획득).

- 본 회의에 대표단 참가(정부대표들의 회의 청취 및 감시).
- NGO 회의에서 진행되는 5개 분과 토론회에 한국측 보고서 제출.
- 6월 세계대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타 NGO와 관계확보.

나. 세계 대회

- 본 대회에 대표단 참가(정부대표들의 회의 청취 및 감시).
- 유럽 교포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회기간중 이벤트 행사개최(마당극, 사진전시, 비디오상영 등의 문화행사, 인권보장 행진에서의 풍물패 행진 등).
- NGO포럼, 총회기간중 타 NGO와의 공동사업 적극 추진(예 : 보안법 해당국, 제반 국제 협약 미가입국의 가입 촉구 등의 기자회견, 공동의 서명, 발표회 등)
- 한국 인권상황 보고서, 선전물 배포.
- 타 NGO 행사 참여, 교류, 초청등의 연대활동.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도중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및 실종자 관련 인권단체들이 "실종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C. 세계인권대회 공대위 연구계획

1. 계획

1. 국제인권제도 기본 개요에 대한 자료수집, 한국의 이용가능성 검토
2.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인권제도의 실태 및 사례 수집 분석. 각 제도별로 앞으로의 이용방향 모색검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토.
 - 가입한 조약의 목록 및 각 조약별 실시제도 분석. 조약별 실시제도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및 회의 등, 사례수집. 인권단체의 대응과 문제점 정리
 - 1503 절차 한국적용 사례, 유네스코 임수경 문규현 사건, B규약에 의한 손종규 사건, 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한국의 인권문제와 정부의 답변 수집.
3. 우리나라 가입하지 않은 인권조약들 검토 : 고문방지조약, 사형폐지 의정서 등
4. 각 지역별 인권기구에 대한 검토. 아시아 지역 인권기구 구상과 논의의 역사 검토. 우리의 입장 정리
 - 유럽, 미주, 아프리카의 지역 인권기구 자료 수집. 검토
 - 유엔의 구상과 논의 (아시아 변협회장 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변호사 회의, 인권정보센터, 박원순 변호사 논문, Prof. Parmentier 도움요청)
5. 비정부 인권기구들의 유엔활동 및 국제활동 분석 검토. 한국인권단체들의 활동방향 모색
6. 새로운 국제인권제도의 구상에 관한 자료검토. 우리의 입장 정리
 - 현재 이루어진 각 제안에 대한 자료 검토

Amnesty International, 유럽지역 국가들 ; UN Special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CJ, 중남미 지역회의 ; International Penal Court(최근 유엔 안보리 구 유고연방 내전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 형사재판소 설치안과 관련)

Arab Institute of Human Rights ; better coordination of UN human rights work
중남미 지역회의 ; special rapporteur on women, UN High Commissioner for Indigenous Affairs

Antoine Blanca ; 인권관계 조약 비준, 개발예산의 0.5%를 인권관련 프로그램에 투자

 7. 새로운 국내인권제도 또는 기구의 구상(인권위원회 등) 검토-서유럽, 호주의 입법 검토
 8. 아시아 지역 및 세계의 인권문제 현안과 한국인권단체들의 대응방향 분석
 9.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10. 한국의 인권상황 및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법제도 비교 보고

2. 구체적 준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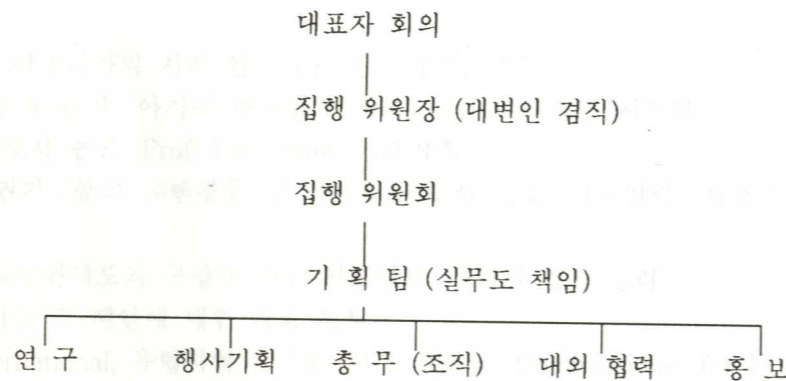
1. 3월 15일까지
 - 기존 유엔의 인권제도 문제점과 강화방안,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기구 구상 문제에 대한 한국측 의견 작성
 - Asia NGO Meeting 관련,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별 보고서 작성가능한 부분 작성-각 부분에서 말아야 함.
 - Asia지역 NGO들이 비엔나 NGO Forum에서 공동으로 할 행사의 주제 검토. 제안문 작성
2. 3월 20일 까지
 -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및 NGO Meeting에서 제출할 의견 정리
3. 일본 세계인권회의 NGO연락회에 자료 요청 - 지금까지의 활동내용, 앞으로 활동계획, 행동계획, 행동프로그램, 장래전략에 관한 보고서, 세계인권회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권고
4.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지역회의 자료 요청. ICJ, Asia Watch 자료요청

D. 세계인권대회 공대위 조직

1. 구성

- 1) 참가 단체 ; 60만원의 분담금 (월 10만원씩 6개월분) 을 납부하고 실무체계에 실무 인력을 파견한다.
- 2) 참관 단체 ; 10만원의 분담금을 납입하고, 각종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 3) 개 인 ; 5만원의 분담금을 납입하고, 각기의 처지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체계



3. 참가단체 연락처 (3월 11일 현재)

* 연락사무소 567-2316(전화) 568-3439(팩스)

@ 참 가 단 체 (가나다 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i>mv</i>	522-7284	522-7285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i>김노현</i>	796-1163	745-9712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i>이정현</i>	763-2606	745-5604
*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i>박태근</i>	764-1684	743-9752
* 불교 인권위원회 <i>이진</i>	725-0452	(겸 용)
* ILO 전국 노동자 공대위	739-7285	735-9400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764-0203	744-6189
* 천주교 인권위원회 <i>이진</i>	279-2302	269-1567

@ 참 관 단 체 (가나다 순)

* 민족사진연구소	745-9618	745-6073
* 한국 성폭력상담소	525-5838	525-5838
* 한국 여성단체연합	737-6891	722-9244
*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763-9633	763-9634

@ 개 인

* 서준식, 노태훈	766-1163	745-9712
------------	----------	----------

E.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선언문

우리는,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이 대회에 참가하고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인류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종족,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 그 밖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을, 보편적 원칙으로 확립하였다. 유엔은, 그 헌장에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을 그 목적의 하나로 명시한 데에 이어 1948년 12월에는 인류의 인권을 향한 투쟁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그후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권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1966년 12월 유엔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그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고 1976년에 이르러 마침내 이 규약들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국내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개별국가의 법적 의무를 이루게 되었다. 그밖에도, 유엔은 '고문 및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인격을 손상하는 처우를 금지하는 협약' 등 특정인권분야에 속하는 국제조약들을 마련해 왔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적인 근로기준을 규정한 다수의 조약을 마련하는 등 유엔 산하 또는 관련 기구들도 국제적 인권기준을 수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지구 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제 권리는 커녕 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은, 사람의 자주성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과 대량 학살의 참화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는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또한 어느 정도 개발에 성공하고 형식적으로는 민주화 과정에 있으면서도 인권 상황 만은 종전과 다름없이 개선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인류는 전 세계적인 탈냉전에 발맞추어 인권 보장의 진전을 이루기에 유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이래 인권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반성, 평가하고 앞으로 취하여야 할 방도를 모색하며, 인권과 사회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기존 인권기준의 실행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세계인권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 대회는 1968년에 테헤란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 이후 실로 25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서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인권 상황을

항상시키고 인권옹호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회에는 유엔 회원국 정부와 유엔전문기관들이 참가할 뿐 아니라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참가도 허용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공로와 그 활동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인권의 향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갖가지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하고자 한다. 이 대회에서,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국내외 인권상황과 그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와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파악, 평가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법적, 제도적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며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애쓰는 여러 국제기구, 민간단체 및 인사들과 우리의 정보, 지식 및 견해를 교환하고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이 그 동안 우리 국민이 한결같이 추구하여 온 민주화와 인권신장의 이념 및 목적은 물론이고 국가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정부가 1990년 A규약과 B규약 및 그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등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인권상황을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키로 결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의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인권상황이 국제기준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헌법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고통스럽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한시바삐 이러한 괴리를 없애고 6월의 세계인권대회에서는 차원 높은 전 인류적 인권보장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몰두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인권 분야에서 수행되는 민간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이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우리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제의한다. 우리는 정부가 진실로 인권신장을 위한 성의를 보이는 경우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을 것이며 진실로 인권상황의 개선을 바라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그러한 단체와 국민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 두고 우리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1993. 3. 12.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본문은 ... (The text on the left page is extremely faint and mostly illegible due to the quality of the scan and the age of the document. It appears to be a preface or introductory text.)

회원명단 ... (This section lists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ith names and titles that are difficult to read due to the fading.)

제 3 부

세계인권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준비회의(방콕회의)

A. 민간단체회의 (NGO CONFERENCE 93.3.25~3.28, BANGKOK)

1. 아시아·태평양 민간단체회의 배경

1990년 12월 45차 유엔총회는 “1) 1948년 국제인권선언의 발효이후 인권부문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검토, 평가하고 극복해야 할 장애와 방법을 모색, 2) 정치·시민적 및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와 사회, 경제적 발전의 역학관계를 검토, 3) 유엔의 인권규약 및 제도가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 4) 인권제도의 관행의 효율성을 재평가, 5) 인권활동과 인권관계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 6) 적절한 재정 및 기타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93년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991년 12월 17일 46차 유엔총회는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회의(1992년 11월 2일-6일), 중남미지역회의(1993년 1월 8일-22일) 유럽지역회의(1993년 1월 28일-30일)가 차례로 열렸다.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는 1992년 11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아시아 정부대표들의 노골적인 지연작전으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유엔인권센터의 강력한 권고와 아·태지역 민간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방콕에서 대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3월 29일-4월 2일)에 앞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콕에서 민간단체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정부 인권단체들이 세계적 및 지역적 인권문제에 관해 의견을 조정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아·태지역의 민간단체 차원에서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의는 네팔에 있는 Institute for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INHURED INTERNATIONAL)과 태국의 Asian Culture Forum on Development (ACFOD)가 유엔의회와 그밖의 국제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조직하였다.

이 회의에는 110개 민간단체에서 약 240명이 참가하였다.

2. 민간단체회의 진행

민간단체회의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날인 24일 오후 5시 추라롱콩대학교 법과대학 회의장에는 올바른 회의 방향에 관한 오리엔테이션과 참가자를 위한 환영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25일 9시 추라롱콩 법대 학장의 환영인사와 참가자들의 인권탄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묵념으로 회의는 시작되었다. 민간단체회의 개최를 위해 준비를 맡아 일해온 네팔에 소재하는 국제인권단체인 INHURED의 준비경과보고가 있었다.

이어 지난해 동안 개최된 국제인권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92년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오사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회의' 보고와 피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92년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 평화와 인권 공개토론회인 '21세기를 위한 민중의 계획(약칭 PP21)' 그리고 서아시아 인권 공개토론회 등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아시아의 인권, 인권존중을 위한 투쟁'이라는 내용의 아시아 민간단체에 대한 간단한 소개, UN제도 내에서의 현 세계인권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어졌다.

민간단체회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선언문 초안위원회(Drafting Committee) 구성에 관한 방법이 소개되고 추천되었다. 민간단체 운영위원회는 아시아를 5등분한 지역대표 1인과 여성, 아동, 원주민의 부문대표 1인씩으로 구성되었으며, 초안위원회는 아시아지역의 전문적이고 명망있는 인사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인권, 민주주의와 개발의 권리'(Gothom Arya), '여성의 권리'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아동의 권리, 원주민, 노동자의 권리, 불가분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재소자와 난민의 권리, 미귀향 동포, 고문, 군사화의 문제, 인권교육 등 각 주제에 대한 Workshop에 따른 사전 설명이 있었고 각각의 회의장에서 민간단체회의의 결과로 채택될 구체적인 권고안에 초점을 두고 위 주제에 대한 Workshop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실행위원회 회의(Working Group Meeting)로 첫날의 공식일정이 끝났다.

26일 오전은 위 주제에 대한 Workshop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 아동의 권리 워크숍은 아시아에는 8천 아동들이 출역을 하고 있다며 인도의 카펫트를 만드는 아동의 심각한 실태를 제시하며 아동들에 대한 의무교육 실

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캠페인, 세계대회에서 쟁점화들을 설명하였다.

노동자의 권리 워크숍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다며 파업을 막기위해 만든 반테러법에 의해 노조간부가 구속, 살인, 고문, 강간 등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였다. 또한 ILO기구의 가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치범, 난민의 권리 워크숍은 국가안보, 국가안전의 이유로 정치적인 감금, 고문, 의문사, 사형, 강제이동 등을 자행하는 아시아 정부에 대해 고발하며 인권유린자를 처벌하기 위한 유엔재판소를 만들어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정부와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할 것과 희생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불가분의 권리로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워크숍에서 아시아는 하나의 문화권이 아니고 지역마다의 특성과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는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로 대체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주민의 권리 워크숍은 올해가 원주민의 해인데 UN내에서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원주민의 권리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와 손잡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치 등을 촉구하였다.

그외 인권교육에 대한 워크숍에서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인권기구의 실행, 각나라에 유엔정보센타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 등의 보고가 있었다.

오후에도 전날 진행된 워크숍이 이어져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원주민의 권리, 군

사화의 문제, NGO전략회의, 유엔인권제도와 기구 등의 주제에 대한 Workshop이 진행되었다.

민간단체회의의 결과로 채택될 방콕 민간단체 선언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시작되었다. Workshop에 대한 보고와 공개 토론회 이후 선언문 초안위원회의 초안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27일까지 계속되었다.

민간단체회의는 방콕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먼저 핵심적인 문제 제기로 인권개념의 보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관계 원칙, 여성인권, 인권을 위한 세계적인 연대,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 군사화에 대한 염려, 모든 국가의 민족자결권, 고문 등 비인간적인 관행에 대한 염려, 표현의 자유, 인권교육, 원주민문제, 아동의 인권, 농민·노동자의 인권, 망명자·정치범의 문제, 사법부의 책임과 독립 등 16개 항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개발과 인권과의 관계, 여성, 어린이 및 노동자의 권리, 발전의 권리, 유엔 인권제도의 강화와 지역인권 향상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인권문제의 예방과 구제와 관련해 32개의 쟁점을 제시, 구체적 행동계획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3. 민간단체회의의 주된 논의사항

(1) 세계인권회의를 앞두고 아시아지역의 주요 인권침해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유엔의 인권제도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를 더욱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세계인권회의의 본래 뜻에 어긋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주권의 불가침과 내정간섭 금지의 원칙, 그리고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인권개념이 서양의 전통에 근거한 것으로 동양사회의 전통과 어긋난 점이 많고 이러한 인권개념을 제3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주장은 그 주장 자체만으로 볼 때 일면의 타당성이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나라들의 극심한 인권탄압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기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민간단체회의 회의에서는 이러한 아시아 국가정부들의 태도에 관하여 민간단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 민간단체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고문방지협약,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금지조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조약 등 주요한 인권조약들이 정한 인권의 개념은 이제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보편의(Universal) 규범이 되었으며 이러한 인권들은 불가분의(Indivisible) 것이고 인권문제는 모든 인류의 관심사로서 한 나라의 국내 관할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고 국가안보 등을 포함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인권개념들이 서구의 것으로 제3세계에 맞지 않는다고나 경제발전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거나 인권문제는 국내문제이다는 등의 제3세계 정부대표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3) 민간단체회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는 아시아지역의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민간단체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루어진 워크샵의 대체적인 결론은 아시아지역에도 정부간 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인권침해에 앞장서 온 이 지역 정부들의 태도에 비추어보아 그러한 기구가 오히려 지역의 인권탄압을 정당화하고 유엔 등 국제인권제도의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부단체들의 강력한 감시기구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며 아시아지역 정부간 기구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기구와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는 범위안에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 절차의 공개성과 투명성, 특히 민간단체와 피해자 개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민간단체들의 연대를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고 비공식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이는 앞으로 아시아지역 민간단체들간에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4) 민간단체회의에서는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로 캄보디아, 버마(미얀마), 이스트 티모르를 점령한 인도네시아, 부겐빌(Bougainville)의 원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부탄,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이스라엘을 선정하고 이들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B. 아태지역 정부간회의 (93.3.29~4.2, BANGKOK)

1. 개 관

3월 29일부터 4월2일까지 방콕에서 49개국의 아태지역 정부대표, 100여개 민간단체, 유엔기구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아태지역 인권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의안을 채택하고 곧바로 의안별 토론에 들어가 각국정부대표단의 발언과 각급의 민간단체의 발언 그리고 유엔기구대표의 발언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정부간 대표들만으로 구성된 선언문 초안위원회(Drafting Committee)가 준비 제출한 방콕선언문이 마지막 날에 채택하고 폐막되었다. 이 선언문은 아시아지역 정부대표들이 인권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결의를 했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인권침해국 정부대표들의 강경한 태도가 많이 반영되어 인권의 일반적 원칙도 분명히 재확인되지 못했으며 인권실현을 위한 구체적 공동의지도 담겨지지 않는 등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다른 대륙의 선언문에 비교하면 크게 뒤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의 전반적 흐름은 국가주권의 불가침과 내정 불간섭, 그리고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권개념을 3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명분으로 자국내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려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노골적인 입장과 아태지역에서 실질적인 인권의 진전을 이루려는 민간단체들과 유엔 전문기구의 노력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

려는 일본, 한국, 사이프러스 정부의 노력이 대립되어 진행되었다.

주요의안은 '국제적·지역적 인권제도의 시행 그리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주제의 심의', '지역에 특별히 중요한 세계인권대회 목적과 관련한 의안의 심의', '세계인권대회와 그 준비과정에 관련하여 지역 및 국가차원의 홍보활동에 관한 심의'였다. 의안의 심의는 각국 정부와 옵저버들이 서면이나 구두로 발언을 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2. 개회식(1993. 3. 29. 오전)

1993. 3. 29. 방콕 ESCAP(유엔경제사회이사회 아시아지역본부)에서 세계인권대회의 아태지역회의가 열렸다. 아시아지역 49개국 대표와 100여개의 민간단체(NGO), 다른 유엔조직과 유엔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먼저 ESCAP 사무총장 라페우던 아메드가 첫번째 발언자로 나서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인권의 향상에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왔으나 항상 주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갈망하는데까지 미쳤던 것은 아니라며, 아태지역의 2000년대를 향한 사회개발전략과 인권Commission과의 밀접한 공동보조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의 향상을 위해 ESCAP은 많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유엔 사무총장을 대신한 인권담당 사무부총장 이브라히마 풀은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문제의

보편성, 객관성, 비선택성을 확보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유엔의 효율적인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유엔총회에 권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태국의 프라송 순시리 외무성 장관은 "과거 아시아와 비아시아국사이에 국제적 인권의 기준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대립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번 회의가 아시아의 인권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공동체로서 다각도의 협력을 모색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안레크파이 태국 수상은 축사를 통해 "태국은 민주화로 나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서 부딪히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결심을 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여 "인권과 민주화와 발전의 상호 연관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인권영역에서 국제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키는 데 아시아가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의안에 대한 토론

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개념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아시아지역의 문화적·정치적(예;유교문화, 미개발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며 인권의 보편성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표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선결없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하여 다른 나라의 대표들과 모든 NGO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과 조화된 균형있는 발전은 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권규범의 적용을 감시하고 인권의 침해를 비난할 수 있는 국제 공동체의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중 일본

대표는 "인권의 중대한 침해에 대해 다른 나라의 정부나 민간단체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국대표인 신두병 인권대사는 "모든 정부의 인권정책과 관행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인권의 보편성, 객관성, 그리고 비선택성의 원칙들을 지지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신 대사는 나아가 개발없는 인권을 반대하는 몇몇 아시아국가들의 견해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대하면서, "개발의 기초는 바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들이 제시하는 모든 인권들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6월에 열릴 세계인권대회가 모든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진전된 단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대표의 발표는 아시아 여러 국가와 NGO들의 많은 박수와 성원을 받았다.

나.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한국 민간단체 공대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외세지배하의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발언을 하여 많은 성원을 받았다. 이 성명에서 36년의 일제 지배라는 아픈 경험을 지닌 한국인으로서 현재 신식민지나 외세의 억압을 받고 있는 민족과 국가들에 대해 같은 아픔의 뜻을 전하면서 "외세의 지배는 모든 인권의 전면적 부정, 특히 자결권의 부정이며 그것은 한 민족이나 국가가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노예화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세계의 인권을 증진·보호하고 식민지 지배나 외세에 점령당해 고통당하고이에 항거하여 싸우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일이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 공대위는 따라서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다른 나라·민족에 대한 지배정책은 즉각 포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에 대해 이 문제 해결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억

압 민족의 대표 참여의 보장, 자결권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위한 구체적 조치와 관련제도의 보완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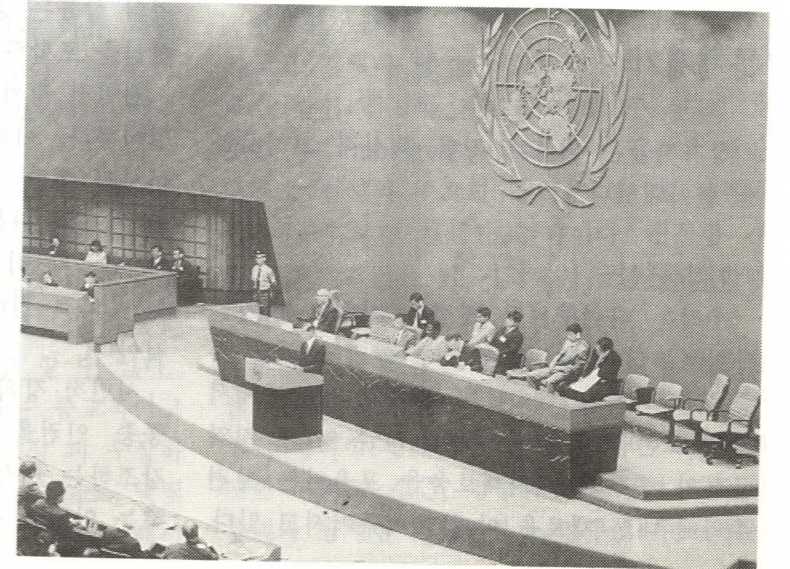
다.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으로 야기된 인권침해, 특히 정신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발언들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정대협, 아시아지역 여성단체 및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성명서외에 과거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를 주장하는 발언, 여성의 권리에 대한 발언, 안전보장이사회의 민주화를 거론하는 발언 등에서 정신대문제가 포함되어 제기되었다. 주내용은 정신대 문제는 전쟁기간중에 여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와는 달리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한 국가범죄이며 이는 다른 민족에 대한 인종말살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쟁 후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환기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등과 같은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명확한 진상 규명과 처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문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일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일본 중의원 의원인 하세 유리코씨는 2차대전 중 아시아 태평양의 국민들에게 가해진 재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은폐되어진 2차대전중의 침략국의 인권침해는 현재 아시아 국가간의 상호관계 및 친선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인권증진을 위한 지역적인 협조를 강조하고 관련 국가의 공식적 사과가 시급히 이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 그의 60여개의 비정부단체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발언은 주요 인권현안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민간단체들은 대회전기간중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며 민간단체 공동성명을 구체화시킬 개별주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작성하여 대표발표자를 선정하여 발언하는 등의 조직적인 대응이 주목되었다. 예를 들어 여성, 어린이, 원주민의 권리, 고문방지, 표현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한 법률, 군사화, 인권 교육, 지역인권보장제도,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처벌문제 반대 등이 그 내용이었다.

특히 많은 민간단체들과 일부 정부대표들은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기구들이 필요함을 권고하였으며, 민간중심의 인권단체들의 활동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일부 민간단체들과 정부대표들은 개발지역 인권의 신장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제경제조직의 역할을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민간단체의 라자무르티씨는 북반구의 정부와 지식인들은 국제조직들이 제3세계의 수백만 민중에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비정부조직(민간단체)선언 (1993.3.27, 방콕)

개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인권과 민주적 개발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110개의 비정부조직에서 파견된 약 240명의 참가자는 여성, 어린이, 원주민, 노동자, 지역개발 등의 문제를 대변하면서 1993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콕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아·태 지역에서 현재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임은, 인권에 관한 아시아지역의 정부간 모임(1993.3.29~4.2, 방콕)과 세계인권대회(1993.6. 비엔나) 및 그 이후의 활동을 앞두고, 국제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와 제안을 제출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촉발되었다.

문제제기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 고려사항을 뽑아내었다.

1. 보편성

우리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을 심화하는 데 이들 문화의 인간관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아·태 지역 문화의 풍부함과 지혜로움을 포용하는 보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적 인권기준은 많은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성, 어린이, 소수자와 원주민, 노동자, 망명자와 피난민, 불구자, 노인 등과 같은 특수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인권에는 보편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옹호하지만,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무시하는 문화적 관행은 용납할 수 없다.

인권은 보편적 관심사이고, 그 가치가 보편성을 갖는 것이므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국가주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없다.

2. 불가분성

우리는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의 원칙을 수호하려고 한다. 이는 인권의 내용이 시민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문화적이든 상관없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관계를 맺는다. 인권의 향유는 공동체에 대한 다소간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날마다 일어난다. 이러한 침해에는 자결권의 박탈, 군사적 점령, 살해, 고문, 정치적 억압, 표현의 자유와 다른 자유의 억압이 포함된다. 한편 빈곤과 최소한의 필수품 결핍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민적·정치적·경제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종종 인권을 회생시키면서까지 경제개발을 강조하는 데서 발생한다. 사회문화적 권리 침해는 인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는 정치적

계의 산물로 자주 일어난다.

경제적 권리는 자원과 수입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해방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예컨대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빈곤은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잘 이루지 못하면서 일어난다.

인권은 종합적이고 통합된 접근이 요청된다. 한 종류의 인권이 다른 종류의 인권을 위해 거래될 수는 없다.

3. 인권으로서 여성의 권리

여성의 권리에 관한 쟁점은 인권논의 중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인권제도와 관행에서, 계급, 카스트, 민족성을 통하여 관철되는 가부장제도는 여성에 관한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가부장제도는 일종의 노예제이고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여성의 권리는 사회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특히 가족 안에서 선언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존엄과 자결권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불가분적이고 평등한 경제적 권리--예컨대, 농토, 집과 다른 자원,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유엔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강간, 성적 학대, 여성매매, 가정내폭력을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는 만연되어 있다. 여성에 대한 범죄는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데 실패한 정부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아·태지역에서 여성의 권리는 종교적이고 민족적 주체성을 군사적으로 점점 더 주장하는 것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몇몇 국가는 이러한 침해가 종종 개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핑계로 이용하였다. 위기상황, 예컨대 인종폭력, 지역폭동, 무장충돌, 군사점령, 추방 등의 경우에 여성의 권리는 특히 침해된다.

국가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적절한 국제적 제도를 만드는 데 동의한 경우, 많은 나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유보조건을 둔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연대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결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국제적 연대를 이루기로 결의하였으며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인종이나 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민족적 기원에 따른 차별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국제적 연대는, 국가주권을 주장하거나 국가의 국내문제 불간섭을 주장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 일국적 질서를 넘어선다.

5. 지속가능한 개발

어떠한 나라도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즉 외국의 지배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면 진정한 개발을 이룰 수 없다. 잘못된 개발(maldevelopment)이나 인권에 대한 대규모 침해의 주요한 원인은 아·태 지역에서 제국주의가 지배한 결과이다. 진정한 개발의 전제조건은 이 지역에서 국가적 해방과 민족의 자결을 획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균형잡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인간개발의 극대화,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 평등과 사회정의, 수입의 분배와 공정한 자원배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여성, 어린이, 시골사람들, 도시의 빈민들, 소수자, 토착민, 망명자, 피난민, 노동자 그리고 그의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서로 다른 집단들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발 모델은 잘못된 개발을 초래하였다. 민족해방을 저지하려는 활동과 정치적 군사적 억압에 항거하는 민중의 자결권이 개발의 구현과 관련한 주요한 양극점이다. 이러한 것은 지역적 특이성과 결합하여 있지만 사실상 국경을 사이에 둔 사람들간의 공통성을 고려해 볼 때 국경은 때로는 자의적인 것이다.

한편 우리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서 국민의 요구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개발모형을 재건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구는 남녀 모두의 요구이며, 부채삭감, 국제적인 재정적·경제적·상업적 체제 개혁, 의사결정과정의 더 많은 민주화를 포함한다. 다면적이든 양면적이든 국제원조기구와 재정기구의 역할은 많은 인권침해를 유발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정책과 행동에 의해 유발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국제적인 경제강국이 인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세계적 평등과 부존자원의 면에서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 엘리트주의와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고 있다.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개발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일으킨다. 시장의 권리(market rights)는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달러 1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착취할 자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 권리를 주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개혁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요망된다. 잘못된 개발은 가난과 수입불균등, 약탈, 수탈의 증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땅과 자원의 점령, 환경파괴가 그 귀결이고, 남녀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인간개발, 자유, 존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거시경제적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모두 그 귀결이다.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확립하고, 여성의 권리부여 및 성적 평등을 증진하려는 절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개발과정을 민주화할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개발과 인간적 개발을 증진하는 것이다.

6.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단지 법률적이거나 형식적인 과정 이상의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일정당이나 복수정당 선거에서 의례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 이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수준의 사람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 영향을 미칠 모든 토론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적,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성과 신뢰성있는 절차와 제도 아래 모든 수준에서 국민이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것은 훌륭한 통치, 타락의 추방, 국민에 대한 국가와 다른 당국의 책임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다수에 속하지 않는, 즉 소수자와 권한이 박탈당한 집단의 참여와 보호를 포함한다. 그것은 시골사람들과 그의 열악한 처지에 있는 집단을 위한 토지 및 사회정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가정에서 작업장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그 이상의 영역에서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퍼져 있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서 조장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7. 군사화

우리는 이 지역에서 점증하는 군사화와 이 목적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군사화는 시민사회의 파괴로 귀결되며, 자결권을 잠식하며, 사람의 자립할 권리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다. 때로 군사화는 자결단과 같이 민간인 집단의 외관을 갖기도 한다.

그것은 특히 원주민에게 해를 끼쳤으며 이주를 강요하였다. 그것은 성적 학대, 강간 그리고 무력 충돌과정에서 자행된 범죄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어린이에게도 특히 상처를 주었다. 이들은 체포와 고문, 철수명령, 집단 살해, 실종, 기타 인권침해와 같은 쓰라린 사건들 때문에 신체적 건강,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부적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군사화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특정한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인종말살을 포함한 인종적 불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작고 다소 덜 군사적인 국가의 군사화는 초강대국이나 종교적 강대국에 의해 조장된다. 대량살해무기의 판매를 통하여 이득을 누리는 것이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개발도상국의 잘못된 성장의 주요한 원인이다.

평화와 인권에 대한 요구는 탈군사화의 요청과 결합해 있다.

8. 자결권

민족의 자결권은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법에 잘 정립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내적 갈등의 깊은 기원은 이러한 근본적인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자결권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한 권리 덕분에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한다. 따라서 자결권에 대한 민족의 권리는 모든 정부에 의해 수호되어야 한다.

또한 자주적 결정이 반드시 국가상속이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주적 결정은 독립, 자유로운 연합, 독립한 국가와의 결합 그리고 대중적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도달된 그의 합헌적 조정 등을 의미할 수 있다.

9. 고문

아태지역에서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의 존재는 점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상당수의 나라에서 피의자는 "자백"을 얻으려는 법집행요원에 의해 고문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관행은 범죄를 통제하는 데 값싸고 편리한 방법으로 취급되어, 몇몇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위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 예방의 차원에서 그리고 치유의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치유라고 함은 고문희생자의 재화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책임자의 처벌도 담고 있다.

10. 표현의 자유

이 자유는 많은 아시아 지역국가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이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및 민주주의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독립한 언론매체가 없다. 사람들은 공포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수감되며, 살해된다. 표현의 통로를 제한하는 핑계거리는 종종 국가 안전, 법과 질서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권위주의의 외피이며 민주주의적 열망을 억압하기 위한 외피이다.

11. 인권교육과 훈련

지금까지 인권교육과 훈련은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내용에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문맹도 여전히 광범위하다.

학교의 교과목은 지배엘리트에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

리를 주장하는데 격려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교육과 훈련은 예방적 및 치유적 영향을 미친다. 즉, 이것은 사람들에게 배상의 가능성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막도록 하는 힘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학교와 학교밖에서 정부 및 비정부계획 하에 종합적인 인권교육 및 훈련을 발전시켜야 한다.

12. 원주민

아태지역은 많은 원주민의 본거지이다. 이러한 원주민에게 기본적인 쟁점은 많은 것이 정부에 의해 토착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원주민들은 적절한 국제인권기구 아래에서 보호받아야 될 그들 특유의 문화적 주체성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한 정부-남이나 북으로부터 혹은 동시에 혹은 국제적 금융기구와 다국적 조직-에 의해 자행된 민족살해, 인종살해의 희생자이다. 현재 이용될 수 있는 국제적 법률제도는 집단적인 인권보호를 보장하기에는 취약하다.

이 지역의 많은 곳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여타 권리들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중에는 토지의 몰수 및 약탈, 무장충돌, 피난민으로 추방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무력에 의한 박해 및 억압과 함께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때로는 관광업이 상업적인 착취를 통하여 원주민의 생활양식을 파괴하기도 한다.

13. 어린이

어린이의 학대와 착취가 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것에는 어린이 노동, 노예 및 성

적 학대, 어린이 매춘, 어린이의 판매 및 거래행위, 무력충돌 상황의 어린이, 수감된 어린이,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어린이 또는 모든 것을 박탈당한 어린이, 가족분열이나 해체와 더불어 가내에서 학대받는 어린이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 영양공급, 교육, 보호장소, 참여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사항조차 종종 충족되지 않는다. AIDS의 출현은 어린이를 더욱 궁지로 밀어 넣었다.

어린이의 권리는 많은 상황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다. 초기에 어린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체제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즉 가난, 영양부족, 질병, 교육의 부족 등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어린이의 성장을 가로막고, 이들로부터 어린시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다.

큰 흐름은 여자어린이에 대한 차별, 군사화, 왜곡된 개발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비록 많은 나라가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지만 그 집행은 여전히 미미하다. 즉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 가족을 지원하려는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보다 입에 발린 소리에 그치는 것이다.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구체화된 것과 같이 생존, 보호, 개발 그리고 참여에 대한 어린이 권리의 집행이, 국가의 능력과 국가의 안전에 관한 고려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14. 노동자

아태지역의 노동자들은 받아들일 만한 인권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지역에서 최악의 인권침해를 감내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지도자가 상당수이다. 연대할 자유와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는 몇몇 국가에서는 극히 제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당

연한 것으로 수용되는 인권이 공장과 작업장에서 무시되고 있다. 여성, 이주민, 노예노동자,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비공식적이고 비조직된 부문의 경우 노동자의 인권은 훨씬 더 열악하다.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 특히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는 이 지역에서 자주 무시된다.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적 조직이나 기구는 때로 경제적 자유라는 명분아래 이러한 권리를 잠식하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노동자의 권리침해 중 상당수의 것은 남쪽에 대해 인권을 외쳐대는 바로 그 북쪽 국가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15. 망명자와 피난민

망명자와 피난민문제는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억압, 무장충돌, 민족분화, 그리고 기타 요인과 서로 결합되어 있다. 경제적 요인도 또한 생활근거지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이 거의 없다. 그들의 처지는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국내적, 국제적 기구의 부족과 관계있다.

망명자와 피난민의 안전은 제한적인 정부정책과 차별정책으로 종종 위기를 맞는다.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가도록 강요받지 않을 망명자의 기본적 권리는 자주 침해 되고 있다. 망명자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정립된 절차는 자주 결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본국으로의 자발적인 복귀도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망명자와 피난민의 인권은 자주 제한적인 국가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억압된다.

적절한 망명기구에 대해 동의한 국가는 거의 없다. 이는 국제인권기준을 승인하고 상

황을 국제적으로 선명히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뜻하는 것이다.

16. 퇴보

몇몇 나라는 인권퇴보를 통하여 인권의 향유를 제약하려고 한다. 때로는 민간정부의 외관을 갖기도 하지만, 군사화, 군사점령 및 통치가 확장되면, 인권에 대한 그 부정적 영향 때문에 시민사회의 공간은 축소된다.

우리는 국가가 국가안전, 법, 질서 등을 이유로 인권기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국가가 모든 상황에서 인권을 총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17. 인권활동가/옹호자

비정부조직의 활동을 포함하여 인권활동가/옹호자-인권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과 이 지역내 사회운동에 대해 점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이들은 자주 협박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살해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비정부조직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집단은 민중의 이익을 외치고, 그 진보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유롭게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즉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권리와 인권의 모든 것을 향유할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18.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성

많은 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 행정이 권위적 요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이는 인권기준과 대립되는 다양한 국내법과 결합해 있으며, 특히 차별정책, 불평등, 그리고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데 일부 판사들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과 결합해 있다.

법률체제는 많은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

져 있다. 사람들이 재판체제에 접근하는 문제에 주요한 의문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구조, 지원, 법적 지식의 유포와도 서로 얽혀 있다.

우리는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민중이 재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을 요청한다.

쟁점(Issues)

참석자들은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다.

- * 점증하는 정부당국의 불법;
- *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활동;
- * 남·녀의 존엄을 포함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향상시키는 데 실패;
- * 자결권에 대한 위협;
- * 경제권을 포함하여 남자위주의 정치로 인한, 여성인권에 대한 무시와 끊임없는 침해 및 여성의 능력과 성평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의 부당성;
- * 경제적 빈곤, 사회·문화적 압박, 범죄, 소비주의, 군사화로 인한 어린이 인권의 침해;
- * 점증하는 환경파괴와 자연자원의 고갈;
- * 민족분쟁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무장충돌의 확산;
- * 살인·실종·고문에 의한 정치적 억압, 정치범 그리고 자결권·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억압;
- * 건강권의 침해와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고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열악한 건강보호체계;
- * 인권침해의 생존자들에 대한 건강서비스의 부정;

-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공격;
- * 이민 노동자들의 비보호;
- * 농촌사회에 대한 위협;
- * 인도주의적 기능을 실천하는 건강이나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공격;
- * 광범위한 성적 착취;
- * 극단주의와 혼재된 종교적 불관용과 차별의 다른 형태;
- *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및 기타 구제의 결여;
- * 인권을 침해한 자의 형사면책;
- * 대중매체를 이용한 수많은 강요;
- *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돕는 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
- * 원주민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민족적 압박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적당한 보호;
- * 최하층 빈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
- * 증가하는 수많은 망명자 및 피난민과 그들에 대한 위협, 특히 피난민을 보호하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절차의 결여로 인한 위협, 그들 인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피난처와 안식처를 찾으려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위협;
- * 육체적·정신적 차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
- * 노인의 복지와 지원의 결여;
- * AIDS의 증가와 상대적 차별;
- * 마약의 확산 및 그것과 관련된 이용;
- * 낮은 교육수준, 특히 기본인권정보의 비효율성, 자각과 기술의 결여;
- *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동의를 너무나 많이 유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의 결여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규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 * 국제인권체계에 대한 개인 및 NGO의 접근이 제한된 점;
- * 독자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정부간 차원의 기구의 결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활동에 대한 권고안

일반권고

아시아·태평양 민간단체 대표들로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i) 다음 사항에 의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보호 증진할 것:
 - NGO선언에 제의된 인권과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호연관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
 - 개인의 권리 뿐만 아니라 소수자, 원주민, 비조직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의 집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
- ii)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법률, 정책, 관행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
- iii) 개발전략은 지속적이고 동등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야 하고 개발전략은 자연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모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자유와 존엄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것;
- iv) 인권, 특히 여성인권을 제한하는 관행과 극단주의에 반대할 것. 특히 여성의 독립된 존재를 부인하는 법률, 정책, 종교 문화적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운동, 대중교육, 장기간의 개발과 같은 수단을 취할 것;
- v) 유엔세계인권대회전에 억압적 법률을 개혁하고, 임의적인 체포를 없애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함으로써,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모든 정부수준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훌륭한 정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체계를 민주화함으로써, 국가안전과 법률, 명령에 의해 강요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제거할 것;

vi) 무장충돌의 근본원인인 외국의 지배,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토지의 박탈과 권리의 박탈 그리고 지배층의 외세와의 결탁을 제거할 것;

vii) 무기구입을 줄이고 군사비용을 개발과 인권의 증진·보호·예방, 기구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체할 것. 그리고 협의과정과 사회적 서비스, 평화적 토론문화를 정착시킬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 어린이, 소수 원주민, 조직·비조직 노동자, 피난민, 망명자, 농민, 기타 소외계층을 고려할 것;

viii) NGO를 포함한 인권활동가 내지 운동가의 활동과, 합법적 사회운동을 보장할 것.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격과 위협, 나쁜 관행을 중단하고 이러한 사회변화의 매개작용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

ix) 민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법적인 도움과 지원의 효용을 포함한 법적 수단 및 다른 장치를 통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제시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할 것. 그리고 법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인권침해자의 형사면책에 반대할 것;

x) 무기구입을 줄이고 군사비예산을 인권 개선과 보호로 돌림으로써, 또한 다른 재원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인권이 국가 예산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할 것;

xi) 정보제공을 늘리고 자각과 기술의 개발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인권교육과 훈련을 증진할 것. 참여학습방법이 그 지역의 문화적 부를 이용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적 기준의 증진과 보호에 공헌할 것이다.

특별권고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i)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과 다음의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할 것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1, 2차 선택의정서;
- 고문금지 규약;
-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CEDAW);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조약;
- 망명자의 지위에 관한 조약;
-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약;
- 국제노동기구의 조약들;
- 소수자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

ii) 유보조항, 특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조약과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조약에 적용되는 유보조항을 철폐하고 모순되는 유보조항을 제거하고, 유보조항의 완전성을 재검토하는데 필요한 신속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의 완전성을 보장할 것.

iii) 고문금지조약에 관하여 제안된 선택의 정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 (The Draft Declaratio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비준할 것.

iv) 다음 사항을 위하여 국내입법을 만들거나 수정할 것.

- 이러한 국제적 의무, 특히 평등과 차별 폐지의 조항을 승낙할 것. 그리고 단체와 사람들의 관습법과 국가의 법들 사이의 모순들을 인권의 보편성, 즉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는 것.
- 여성, 어린이, 농민, 노동자, 모든 소외 계층의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것.
- 종교적 조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

v) 조직적인 성폭력과, 고문,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실종, 초법적인 강제처형과 임의적 구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치적 억압을 즉각 중단할 것;

vi) 인권침해의 희생자, 특히 고문 희생자와 죄수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

vii) 정치범, 고문 희생자, 망명자, 피난민에게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할 것;

viii) 국가에 의해 시인 내지 지원된 조직적인 침해, 즉 고문, 성적노예(devadasi(신의 노예)체제의 희생자를 포함), 강제노동, 비자발적인 실종, 임의적 강제집행, 경찰과 군의 압박, 정치적 억압, 부당한 구금과 국내적 이주민의 희생자의 가족과 그 생존자에게 원상회복을 포함한 보상과 배상, 그리고 완전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것;

ix) 아·태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발의도 환영하지만 그러한 수단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지역위원회가 마련되면 국제인권장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조약, 고문금지조약, 개발에 대한 권리선언과 기타 인권과 관련된 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따라야 한다;
- 지역위원회 회원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조약을 최우선적으로 비준하거나 동의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회에 대한 개인 또는 NGO의 청원은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한 청원이나 탄원이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유엔기구에 동시에 탄원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정부내의 공직을 겸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위원은 NGO와 협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 인권조항의 이행에 관한 정부의 정기적 보고체계 보고서의 초안작성에 NGO가 참여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회 회의와 토론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군대, 국가 안전보장 권력을 포함하여, 어느 정부요원이나 혹은 정부의 어떤 활동도 심사와 조사대상에서 면제될 수 없다;

- 지역위원회는 완전한 감사권을 가져야 한다;

- 제소를 심리할 분리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 각 정부는 지역위원회에 관한 정보와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홍보하여야 한다.

x) 공개적인 합의에 따라, 특히 정부관리와 고용인, 법집행 관리를 위하여 고안된 특별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하여 성적 평등의 관점에 입각한 국가정책을 채택할 것. 모든 교육기관의 과목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인권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특히 강조할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GO가 인권교육과 훈련을 잘 실행하도록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xi) 인권조약과 기구에 관련된 자료를 아시아·태평양의 각국 언어로 번역하고 홍보할 것.

유엔에 의한 조치

국제기구

i) 우리는 성차별을 제거하고 성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엔의 모든 인권제도를 성적 평등의 관점에 입각하여 분

석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의 사안들이 유엔의 조약기구, 사안별, 국가별 보호자 및 실무위원회, 독립전문조사단 그리고 자신의 직무내에서 인권보호를 위임받은 모든 기구들의 모든 보고서와 문서 등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ii)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을 환영하며, 이 초안이 총회에서 채택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세계인권대회가 여성의 권리를 인권의 일종으로 승인하며 성차별의 최악의 형태로서 공과 사를 불문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 보다 실효적인 집행절차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에 대한 보충조항을 두어 태아의 성별 결정에 생물학적 조정을 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또한 "성차취반대협약"의 초안을 도입함에 있어 여성 인신매매 반대연합의 제안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iii) 우리는 국가비상사태시의 인권상황의 악화를 사무총장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를 각국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iv) 우리는 비상사태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악화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비상사태에 관한 유엔 보고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v) 우리는 유엔세계인권회의가 현재의 선언을 구체화하는 "개발권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인권옹호자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채택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vi) 우리는 인권에 관한 현재의 정의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고문에 대한 정의, 강간의 범위, 강제이주와 전쟁

범죄의 하나인 정주지파괴가 포함되어야 하며, 성적 희롱, 근친상간, 인신매매 및 매춘을 포함한 성적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vii) 우리는 유엔이 반인륜적인 범죄인 불가촉 천민에 대한 관습과 카스트제도, 종교 및 기타의 요인에 의한 차별을 2000년안에 근절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한 조치는 유엔개발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개발 계획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viii) 우리는 유엔이 원주민의 탈식민화를 즉각적으로 실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실효성

우리는 유엔 기능의 괄목할 성장을 요망하며 인권개선 및 보호를 실효성있게 추진할 아래와 같은 새로운 대응기구 및 조치의 수립을 요청한다.

i) 자결문제를 다룰 유엔특별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기구는 사무부총장의 관할하에 있게 될 것이다.

ii)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한 정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iii) 유엔기구에 대한 개별적 접근의 보장과 개별적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내에 개별적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할 선택의정서 초안작성 방법의 대강을 정할 실무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iv) 아래의 방식을 포함하여 조약감시기구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 국가의 의무수행 및 미수행 정도에 관한 명확한 보고서를 요구할 것

· 국가보고서의 제출, 특히 기일내 제출을 요구할 것

· 국가와 비정부단체간의 협의 및 (비정부

조직의 동의하에) 국가보고서내 비정부조직의 보고서를 포함할 것을 장려할 것

· 공식적으로 비정부조직에게 정부보고서에 상응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할 것

· 각 회의과정을 완전히 공개할 것

v) 현행 국가별·사안별 보고자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며 이들 기구의 실효성을 증대시킨다.

· 보다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한다.

· 실행권고안에 대한 각 정부의 이행여부를 추적조사할 체계적 방안을 마련한다.

·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다

· 유엔 대표단, 보고자, 실무위원의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vi) 인권에 관한 소위원회에 활동하는 위원들은 (정치가나 외교관 같은) 정부직에서 선발하지 못하며 학계, 비정부조직, 언론기관 또는 기타 관련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선출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며 후보자는 출신국이 아닌 타국가로부터도 지명받을 수 있도록 한다.

vii)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관무관을 인권보호와 관련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조화, 조정을 할 새로운 고위 정치기관으로 설치한다.

viii) 상설적 지위와 감시기능을 갖는 유엔 원주민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원주민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한다.

ix) 원주민에 대한 차별을 의제의 상설항목으로 포함시켜 유엔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향상시킨다. 또한 1503절차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다른 기구에서도 제기한다.

x) 상황이 위기로 악화되기 전에 유엔이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제"를 통하여, 사무총장 외 특별대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긴급상황에 인권담당 사무부

총장이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긴급행동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기구를 개선한다.

xi) 인권침해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강제 관할권을 갖는 상설국제인권재판소를 설치한다.

xii) 상설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한다. 이 법원은 개인도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법원에 전쟁범죄, 반평화죄와 국제적, 국내적 무력분쟁시의 성과 관련한 학대 등을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배상조치를 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xiii) 강제적 매춘을 포함한 군대의 잔혹행위를 심판할 전쟁범죄법정을 아시아 지역내에 설치한다.

xiv) 원주민의 권리, 성차별 및 성폭력, 아동의 권리, 여성의 인신매매등의 문제에 관한 특별 보고자를 설치한다. 이 보고자는 정부와 비정부단체 및 정부간기구로부터 정보를 받아 조사보고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인권침해의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그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성폭력에 대한 보고자는 여성지위위원회에도 또한 보고를 해야한다.

xv)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보고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내의 국가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다.

xvi) 유엔직원 및 독립된 전문가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훈련을 한다.

xvii) 성평등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인권에 관한 유엔의 모든 권고적 활동속에 통합한다.

xviii) 유엔예산의 최소 5%를 인권활동에 할당한다.

xix) 개회기간의 연장 및 지원단의 추가적 제공을 통하여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고문희생자를 위한 유엔자발기금과 같은 유엔인권기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증대시킨다.

xx) 유엔의 감시 및 조사보고활동, 이의제기절차와 그에 따른 권고활동, 여성·아동·원주민에 대한 권리침해제출과 관련한 훈련프로그램등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인권교육과 훈련

우리는 유엔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i) "인권교육과 훈련을 위한 민중의 10년"을 선언하라.

ii) 인권교육과 훈련을 점검할 기구-가능한 한 관련 조약의 감시기구에 의한-를 제공하라.

iii) 비정부조직을 포함하여 각국을 위한 인권교육 및 훈련활동을 위한 국제기금을 설치하라.

iv) 각 유엔기구들로 하여금 1995년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그들이 여성인권에 쏟는 조치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을 검토하도록 지도하라.

v) 원주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의 공식의제가 되도록 하라.

민주화

우리는 유엔의 중요절차가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민주화될 것을 권고한다.

i) 안전보장이사회의 민주화 특히 거부권 및 상임이사국 자격의 폐지 및 총회로 추가적 권한 이양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군대에 의한 강제적 매춘과 같은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기 전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ii) 여성, 아동, 원주민, 노동자 등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집단들의 관심사와 체험 그리고 투쟁들이 유엔의 모든 기구와 그 기구의 현재 진행중인 활동내에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그들에게 자문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지역회의 및 세계인권대회의 의제로 포함하며 회의에서의 발언을 위한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 정부상호간의 인권문제를 다룰 구조적 방안이 없음을 고려하여 우리는 아시아 및 그밖의 지역 모두에서 비정부단체가 유엔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유엔인권위원회가 개발하여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우리는 매년 8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할 것을 인권소위원회에 요청한다. 비정부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제사회이사회의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신임결정은 항상 다수결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경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iv) 유엔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적·인적·재정적 자원을 이용하게 하여 인권에 관한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승인, 조장, 지원한다.

특별기구

유엔제도 및 그 특별기구와 관련하여 우리는 유엔과 남과 북의 각국 정부가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감시, 규제 및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i)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그밖의 다자간 및 양자간 조약에 의한 기구들의 정책이 유엔/국제노동기구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하라.

ii)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 및 비공식노동운동단체들을 보호하라. 그 방안으로 비조직화된 부문/비공식부문의 노동자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정책사항과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과 관련한 동기구의 정책사항을 강화하며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와 점령지구내 노동자의 축출 또는 강제이주관행에 대한 상황보고를 한다.

iii)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행동하는 다국

적기업의 활동이 국제노동기준에 합치되도록 하라.

iv) 성과 관련한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유엔대표단, 직원 및 실무자들의 책임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절차를 보장하라.

군사화

우리는 각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i) 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의 생산, 판매, 전시 및 광고와 모든 종류의 군사훈련을 즉각적으로 종결시키는 조치를 취하라.

ii) 현존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해체와 아·태 방어명목의 군사훈련 및 자국민과의 전투를 위한 서방 군사고문관 및 안전요원의 채용을 중지하라.

iii) 군사예산을 개발수요, 보다 나은 인권침해방지기구, 인권보호를 위한 자문절차, 사회적 급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해 재배분하라.

iv) 모든 준군사력을 해산하라.

v) 아·태지역은 외국의 군기지를 유치하지 않으며 핵무기 및 핵시설을 보유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vi) 군사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vii) 유엔평화유지군의 활동, 긴급대응조직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무혈충돌 또는 민족간 충돌의 상황에서 성원전체가 특별히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보장할 것과 여성 및 아동에 대해 취해진 조치의 영향 및 남성군사요원의 군사훈련 및 거동이 현지 여성에 대해 끼치는 효과를 보고 제출할 것.

viii) 인도주의적인 국제법에 위반한 채 구금하고 있는 모든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석방하라.

ix) 모든 시민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라.

D. 방콕선언(1993.4.2, 방콕)

편집자 주 : 세계인권대회와 관련하여 1991년 12월 17일 총회결의 46/116에 따라 1993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아시아국가들의 대표들에 의해 방콕회의에서 채택된 것임.

아시아지역의 열망과 결의를 담고 있는 일명 "방콕선언"인 다음 선언을 채택한다:

모든 측면에서 인권을 검토하며 정당하고 균형잡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값진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인권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지닌 아시아국가들이 세계인권대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함을 환영하고,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원칙들에 대한 서약을 재확인하며,

유엔헌장에서 제기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준수와 신장 문제가 국제협력의 배경으로 올바르게 자리잡았음을 상기하며,

인권관계제도들의 성문화를 통해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의 수립을 통해 이룩한 진보를 주목하는 동시에 이러한 활동체계들이 주로 한가지 범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있음에 관심을 표하고,

국제인권제도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도록 모든 국가들에게 장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국가주권 존중, 영토 보전 그리고 국내문

제에 대한 비간섭의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모든 인권의 보편성, 객관성 및 비선택성을 강조하고 인권 실시와 정치적 쟁점화의 경우 이중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의 대립과 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협력과 합의를 통해서 인권 신장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을 승인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그리고 개발, 민주주의, 모든 인권의 보편적 향유 및 사회정의가 통합적이고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말하며,

개발권에 대한 선언이 개발권을 보편적이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로서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단일한 국제인권규범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정당하고 공정한 세계경제질서를 향한 노력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진보가 민주주의의 그리고 인권의 신장과 보호에 대한 점증하는 추세를 촉진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과 인권에 대한 공중의 의식을 극복하려는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1.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담겨있는 원칙들과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완전히 실현할 것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한다;

2. 국내와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인권의

실제적인 향유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유엔체제를 민주화하고 선택성을 제거하며 절차와 활동기구들을 개선하는 것이 평등과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권을 모든 측면에서 설명하고 실현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균형있는 비대결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한다;

4.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인권을 이용하려는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

5. 국가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 원칙과 아울러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이라는 원칙 그리고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인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6. 크건 작건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결정하고 자신들의 자원을 통제하고 자유로이 이용하며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개발을 자유로이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되풀이하며;

7. 모든 인권의 보편성, 객관성 및 비선택성은 물론 인권의 실행에서 이중기준적용을 배제할 필요성 그리고 어떤 인권 침해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8. 인권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며 동시에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규범체계의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진보에 따라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9. 국가들에게는 적절한 하부조직과 활동기구를 통하여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바탕위에, 또한 그 구제가 제1차적으로는 그러한 기구들과 절차들을 통해 모색되고 제공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10. 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 그리고 모든 범주의 인권들이 동등하게 강조되는 것이 필요함을 재확인한다;

11. 종족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들, 이주노동자들, 장애자들, 원주민들, 피난민들 및 추방자들등과 같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받기 쉬운 집단들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2. 자결이 외국 또는 식민지 지배 및 외국 점령 아래 있는 국민들에게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며 유엔에 의해 인정된 보편적 권리라는 것,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결을 부인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것을 재천명한다;

13. 자결권이 외국의 지배 또는 식민지 지배 및 외국의 점령 아래 있는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영토 보전, 국가 주권 및 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14.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 식민주의의 표명, 외국의 공격 및 점령, 그리고 점령지역에서 불법적인 정착지 설치, 그뿐 아니라 신나치주의, 외국인 혐오 및 민족소탕책(ethnic cleansing)등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극복하는데 관심을 표명한다;

15. 외국점령 아래 있는 인민들의 효과적이고 법적인 보호와 인권기준의 실행여부를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실효성있는 국제적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16. 자결과 독립에 대한 불가양의 민족적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정당하게 투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지역 인민들을 지지함을 강력히 확인하면서, 팔레스타인지역, 시리아의 골란고원 및 예루살렘을 비롯한 아랍의 다른 점령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

해를 즉각 종식시킬 것을 요구한다.

17. 개발권이 개발권에 대한 선언에서 수립된 것으로서 보편적인 불가양의 권리이며 기본인권의 필수적 요소임을 재확인하며 또한 개발권이 국제협력, 기본인권에 대한 존중, 감시활동체계들의 수립 및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국제환경의 창출을 통해 실현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18. 개발권을 실현하는데 주요한 장애물은 국제적 거시경제 차원에서 남반구와 북반구로 상징되는 빈국과 부국 사이의 격차의 벌어진 것으로 투영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19. 빈권이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는데 하나의 주요 장애임을 확인한다;

20.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과 관련한 인류의 권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또한 확인한다;

21. 식민지 또는 외국의 지배 및 외국의 점령과 구별할 수 있는 테러리즘의 모든 형태와 모든 표명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유하는데 가장 위험한 위협중의 하나이며 영토보전과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하게 구성된 정부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국제사회는 그것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비난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한다;

22. 여성이 사회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관심을 가지고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성폭력을 근절시킴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그들의 강력한 결의를 재확인한다;

23. 어린이는 자유롭고 존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지적·도덕적·정신적·사회적으로 발전할 기회와 시설을 제공받아야 하고 특별한 보호를 누려야 한다는 어린이의 권리를 확인한다;

24. 인권을 진정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신장시키는데 국내 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또한 그런 기구들의 개념화와 궁극적인 수립이 가장 좋게는 국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25. 인권신장에서 가치를 공유할 뿐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기초하여 정부조직과 비정부단체간에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표명하고,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296 (XLIV)에 따라 이러한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하는 자격을 가진 비정부단체들을 격려한다;

26. 아시아에서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려는 지역적 장치를 수립할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를 다시 언급한다;

27. 일국적 차원에서 인권 교육 및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가 요청한다면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할 국내 하부조직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과 국제적 재정지원을 산출할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더욱 더 거듭하여 언급한다;

28. 유엔인권기구체계를 합리화할 필요와 조약기구들과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사이에 존재하는 활동의 중복을 피할 보장책 뿐 아니라 유사한 활동체계들의 중복을 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29. 요청국가에게 적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권신장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서비스와 기술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권한있는 기관이 위임한 다른 영역에서의 인권활동을 적절히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과 함께 유엔인권센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30. 인권센터에 개발도상국의 대표들의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한다.

E. 세계인권대회 공대위의 참가

1. 활동내용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권 민간단체가 공동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입장과 제안을 갖고 참가, 공동활동을 전개하여 다른 나라 대표들로부터 조직적인 활동에 대해 많은 찬사를 받음.

◎유엔 인권제도 개선, 방콕선언에 포함되어야 할 한국측 입장 등에 관한 제안서를 각국 민간단체에 배포하고 민간단체회의에 제출함.

◎본 공대위에 소속된 개별 단체들의 조직현황과 사업내용들을 알리는 영문 팜플렛을 개별 단체별로 제작하여 대회기간중에 배포함.

◎아시아태평양 민간단체회의 실행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동북아시아 지역대표로 본 공대위 천정배 집행위원장이 위원으로 선임되고, 결의문 기초위원회(Drafting Committee)에 본 공대위 박원순 변호사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반 운영과 문안작업에서 한국측의 입장을 반영시킴.

◎민간단체 회의기간중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법률(National Security Laws)> 문제에 관한 특별토론을 제안하고, 이 회의에 참가한 필리핀,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쉬 등 아시아지역 10여개국의 민간단체와 특별분과 모임을 가짐.

◎6월 비엔나 대회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법률>에 관한 특별행사를 개최키로 공동 결의함.

◎본 공대위 소속 정신대대책협의회는 일본의 제국주의전쟁으로 말미암은 인권침해(특히 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활동을 전개함.

◎정부간 본회의에서 한국 공동대책위의 대표가 "식민지 지배와 외국 점령하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식 발표를 함.

◎6월 비엔나대회 준비를 위한 "아시아지역 민간단체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Follow-up)"가 결성됐으며, 한국공대위가 이번 대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력을 인정받아 동북아시아지역 사무국(Sub-region Secretary)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본 공대위 천정배 집행위원장이 9인의 조정위원중 1인으로 임명됨.

◎아시아지역 민간단체 대표중에 일인으로 천정배 집행위원장이 이번 4월19~3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인권대회 4차준비위원회"에 참석하게 됨.

◎민간단체 회의와 정부간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중 아시아지역 주요 나라 인권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모임, 간담회를 가짐.

2. 방콕회의에서의 제안 주내용

가. 인권의 일반적인 원칙

- 각국의 사회적·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할 것.

- 특히 인권보장에 있어서 선별성(selectivity)과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적용을 반

대할 것.

- 인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을 확인할 것.

- 인권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국경을 넘어선 것임을 확인하고, 따라서 인권문제를 자국내의 문제로만 규정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할 것.

나. 유엔 인권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 제언

- 유엔 인권기구에 있어서 일부 국가에게 제반 권한이 과다하게 부여되어 있는 비민주성의 개선과 인권 신장을 위한 전문기구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효율적 사업집행을 위한 구조개편 노력을 촉구할 것.

- 기본적 인권조약을 유보없이 비준하고, 이미 한 유보조치를 모두 철회하도록 촉구할 것.

- 동시에 조약을 유보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을 강제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할 것.

- 유엔이 가맹국 혹은 조약 비준국 국민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효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것.

-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인권이사회(human rights)의 절차 및 심사에 있어서 해당국에 대한 직접적 조사와 해당국 NGO의 참여, 발언을 보장하도록 촉구할 것.

- 인권이사회(human rights)의 심사에 있어서 정부 보고의 불성실성 및 인권규약 불일치에 대한 시정요구권의 보장과 시정요구에 대한 사후 심사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할 것.

- 유엔의 인권 기구와 제도 전반을 조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인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AI를 비롯한 민간단체 그리고

서구의 일부 정부가 제안한 인권특별(고등)관무관(SPECIAL COMMISSIONER)의 설치를 촉구할 것.

- 인권 제조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당사자의 구제를 위해 개인의 출소권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인권상설 재판소의 설치를 촉구할 것.

- 유엔 인권기구의 강화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가맹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것.

다. 아태지역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 제언.

- 아태지역 인권선언의 채택과 이에 근거한 아태지역 인권기구, 인권재판소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할 것.

- 아태 제 나라에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를 합법화하는 악법의 철폐를 촉구할 것.

- 종군위안부와 같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저질러지고 아직까지 은폐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구·재판기구의 설립을 촉구할 것.

- 일본이 전후처리의 확실한 청산없이 유엔의 민주화라는 미명아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취임하려는 것은 2차대전의 참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의 설립목적과 유엔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임을 확인하여 이를 위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도록 촉구할 것.

*공대위의 제안 자료집

(편집자주: 이 자료집은 방콕회의에 참가한 「공대위」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간단체 및 정부대표들에게 제안하기 위해 만든 자료집입니다)



KONUCh
Proposals Presented to the Asia-Pacific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AUSTRIA
JUNE 1993



Korea NGOs' Network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207 2/f Changlim B/D, Yoksam-Dong, Kangnam-Ku, Seoul 135-080, Korea
(Tel 82-2-567-2316, Fax 82-2-568-3439)

What is KONUCh?

The Korea NGOs' Network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or KONUCh was formed on 7 January 1993, in order to coordinate a joint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of Korean NGOs at the Conference scheduled to be held in Vienna, Austria in June 1993. So far 8 nationwide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activists have joined and worked for KONUCh. It is expected to establish itself as a permanent and unique network of human rights NGOs in South Korea after the WCHR.

KONUCh is planning to attend the Asia Regional Conference in Bangkok and thereafter the Vienna Conference, with all the pertinent papers and formal recommendations ready. At the conference venue, KONUCh will present video works, hold musical events and other exhibitions and distribute publicity booklets for the NGO Forum and parallel activities.

KONUCh welcomes these opportunities and will work for a better coordination amongst Asian and the Pacific NGOs as well as other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 joint efforts to improve the existing UN human rights mechanisms and put forward an alternative plan for a new people's world order that would abide by principles of participatory democracy, justice, equality, freedom and peace.

Chairperson Mr. Hong Sung-woo (attorney at law)
Chief Executive Mr. Chun Jung-bae

Proposals of KONUCh

- New Horizons for Better Protection of Human Rights : Proposals for Improving the United Nations Mechanism
-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 Asia and the Pacific
- Recommendations for Bangkok Declaration
- Proposal for NGO Parallel Activities to be Conducted Jointly by NGOs in Asia and the Pacific during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Vienna
- Sugges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in Asia : the Stories of Unutterable Sufferings

Member Organizations - KONUCH

1.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Founded on May 28, 1988

Address : Rm. 404, Hyundai Officetel, 1589-8 Seocho-Dong Seocho-Ku, Seoul, Korea.

Tel. 82-2-522-7284 Fax. 82-2-522-7285

Person in charge of the WCHR : Mr. Cho, Yong-whan (attorney at law)

2. Min-ka-hyup (Family Association for Democracy)

Formed on Dec. 12, 1985 as an HR organization of family members of unjustly arrested persons.

Address : 592-7 Chansin 2 Dong, Chongno-Ku, Seoul, Korea

Tel. 82-2-763-2606 Fax. 82-2-745-5604

Person in charge of the WCHR : Ms. Nam, Kyu-seon

3. NCKK Human Rights Committee

Founded on April 11, 1974

Address : Rm. 708 Christian Building, 136-46 Yonji-Dong, Chongno-Ku, Seoul, Korea

Tel. 82-2-764-0203 Fax. 82-2-744-6189

Person in charge of the WCHR : Rev. Shin, Seung-min

4. Th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Founded on Nov. 4, 1988

Address : Ilsim Building 3/f, Mia 2 Dong 762-21, Tobong-Ku, Seoul, Korea

Tel. 82-2-945-6447 Fax. 82-2945-1239

Person in charge of the WCHR : Mr. Kim Hyung-tae (attorney at law)

5. The Buddhists' Committee for Human Rights

Founded on Nov. 20, 1990

Address : Cho-ke Temple, 45 Kyunji-Dong, Jongno-Ku, Seoul, Korea

Tel. 82-2-725-0452

Gen. Secretary : Mr. Seo Dong-sug

6. Korea Woman's Associations United

Founded on Feb. 17, 1987

Address : 1-23, Jeo-Dong, Jung-Ku, Seoul, Korea

Tel. 82-2-738-2883 Fax. 82-2-722-9244

23 affiliates

Gen. Secretary : Ms. Na Young-hee

7. Korea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Sexual slavery by Japan

Founded on Nov. 16, 1990

Address : Rm. 802, Christian Building, Jongno 5 Ga, Jongno-Ku, Seoul, Korea

Tel. 82-2-763-9633 Fax. 82-2-763-9634

20 affiliates

Co-representative : Ms. Lee Hyo-chaee (Professor)

8. Workers' Joint Committee for the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s and Revision of Labor Laws

Founded on Oct. 8, 1991

Address : Rm. 1802, Press Center, 1-25 Taepyuong-No, Chung-Ku, Seoul, Korea

Tel. 82-2-739-7285~6 Fax. 82-2-735-9400

2 trade union national centers and 2 national labor movement org.

NEW HORIZONS FOR BETTER PROTECTION OF HUMAN RIGHTS : PROPOSALS FOR IMPROVING THE UNITED NATIONS MECHANISM

1. Introduction

The United Nations, since its founding, has worked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the world through adopting numerou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conventions and specific activities. Much of the magnificent advancement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owe to these works of the UN. In particular, the universality and indivisibility of human rights are now accepted as the basic principles to be observed and respected by all states and peoples all over the world. However, the achievements of the U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can not mislead our attention from many shortcomings and problems in its instruments, mechanisms and procedures. The UN human rights system as a whole, which can be said to be a memorable milestone of struggle toward human dignity of all human being have many difficulties and obstacles to be reexamined, amended, restructured and overcome.

We, the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would like to point out what we feel are problems and make a few proposals in spite of our much limited experience. We sincerely hope our proposals would serve as reference materials at this Conference where the obstacles in the UN human rights system and activities are assessed and evaluated and propose some recommendations.

2. Need for a System to Compel Universal Ratific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There are many states in the world and especially in Asia which still do not respect the rights to life, physical integrity and the minimum level of living standards. These states remain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out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princip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ll of which set up the basic standards of human rights and are accepted as minimum common norm of our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 has urged all states to ratify and give accession to the human rights treaties through many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ECOSOC and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But the impact generated by such efforts of the UN on these states is quite minimal.

We do believe that the states which ignore and violate the universal standards of human rights must be assumed to have failed to fulfil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o their peoples as well a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ther such violation of human rights are committed under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or on other grounds. Therefore,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and this Conference must urge and request all states to ratify and accede to all princip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above-mentioned

ones without any reservation and to revoke immediately all reservations, declarations, notifications and/or objections restricting the scope of these treaties. At the same time, the World Conference must come up with a system that will effectively and properly force every state to ratify or accede to such treaties. The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human rights treaties by all states w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a global guarantee of human rights.

3. Duties of the UN Member States and the State Parties to the Treaties

Even in the states that have ratified all or part of the human rights treaties, it cannot be said that the human rights standards stipulated in them are being properly observed and respected. Some states have ratified the human rights treaties not because they genuinely want to protect human rights and freedoms, but because of diplomatic and political camouflages. Peoples under their jurisdictions are neither well informed of their governments' ratific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nor the details of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human rights standards. Moreover, distortion, by the judicial authorities, of these human rights norms which leads to the ignorance or restriction of rights and freedoms thereunder are not rare.

Therefore, first, every member state of the UN and the state party to the human rights treaties should inform its people of UN resolutions, recommendations concerning human rights, the details of the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fact of their coming into force. Considering that the media in some states are reluctant to pay voluntary attention to human rights issues, the UN should develop publicizing channel going directly to the people. Secondly, the UN should request all member states to establish at least one UN Information and Resource Center. That center will make available to all citizens, especially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ir relatives, human rights activists and lawyers, the UN documents and resource materials concern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Thirdly, a handbook explaining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and activities, relevant standards and provisions of the trea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should be written and published by the UN. Every member state should translate and put this book in the official curriculum to educate students of all levels, lawyers and law abiding officials. This public education system will reduce the relevant authorities' attempts to justify human rights infringements by distor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4. Some Issues on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A. 1503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81 and 1982, South Korea was subject to the considerat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when the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decided to forward the case in that South Korea was in the "situation which appear to reveal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However, during this period while the Korean people were struggling desperately against the military government to win their human dignity, almost all of them were unaware of the fact. If they had known the Commission's action, they would have been greatly encouraged. Even though we recognize that confidential diplomatic measures are sometimes useful and necessary in solving certain human rights problems, in principle, details of the UN activities should be made known to public in due course.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should focus on encouraging and supporting the people who are struggling for human rights, with some exceptions, in that the ultimate solution of human rights problems can only be solved by the people fighting for it. In view of this, the near total confidentiality of this procedure must be revised to establish the openness within a certain scope.

B. The Human Rights Committee

Among the various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the Human Rights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as been carrying out most significant role. The Committee's examination of government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and enjoyment of rights and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venant, consideration of individual communications based on its power under the first Optional Protocol, and interpretation of substantive contents of the Covenant through general comments have played an indispensable role in setting up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human rights and pressing each state party to sincerely implement the Covenant. However, this mechanism has some provisions to be reformed.

First of all, regarding the examination of government reports, a measure should be devised to compel a concerned government to report truthfully on the real situation in which the Covenant is implemented and the related domestic laws and practices are applied. A mechanism to supervise the government to take concrete steps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is necessary. In case a government report is on the agenda for review by the Committee, its members should be provided with all the information and materials on the state's human rights situation which have been examined and investigated by every UN machinery. In order to obtain the most accurate and recent information, not only NGOs with consultative status but also those working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within the state should be permitted to officially submit information and reports to the Committee. If necessary, the Committee should conduct its own independent investigation and gather accurate information. The Committee's meetings to examine the report should be given a sufficient amount of time to prevent them from degenerating into a diplomatic gathering. The NGOs which have provided reliable information and materials to the Committee should be invited to the meetings as observers. Before members of the Committee finally comment on the reply of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 these NGOs should be given an opportunity to intervene and put forward their opinions on the reply. On the other hand, the state party should report the measures taken along with the recommendations suggested by the Committee's final comments within a specific period, all of which will make the Committee meetings concrete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state.

Secondly, in the course of consideration of individual communication under the Optional Protocol, whether examining their admissibility or merit, the concerned government should strictly keep the time limit within which it can submit its observation or information. During the consideration, the Committee should be able to hold hearings with both the communicator and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 present, in case the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and requests of the parties. What is important in this procedure is that, once the Committee finds that human rights or freedoms under the Covenant have been violated, the effect of such decision must be strengthened by granting the legally binding force. Furthermore, a program should be formulated to monitor whether the concerned government reports its corrective measures within a specified period and such measures ar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decision.

Thirdly, a system should be instituted in order to publicize as widely as possible the Committee's final comments on the government reports and final decision on the individual communications. While strengthening the public relations function of the UN Secretariat, the concerned government should be obliged to place the final comments and/or decision on its official bulletin.

C.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Committee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inc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ly stipulates an abstract and gradual obligation on its state party to implement the provisions, unlike the immediate and concrete obligation to fully guarantee under the ICCPR, its effectiveness is greatly questionable. In light of the indivisibility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rom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particular, the approach under the ICESCR should be reconsidered. Therefore, a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to enforce a certain level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i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even if it is difficult to set a uniform standard due to the differences of the state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s.

To solve the problems concerning the ICESCR, the mandate and function of the Committee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hould be redefined by adopting an Optional Protocol. As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e Committee should be able to examine a government report and to review individual communications with certain limitation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mmittee's examination of government report can be made in such way similar to that of the HRC, but its final decision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can only be granted an advisory effect without legally binding force.

D. The Enlargement of NGOs' Consultative Status with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At present, the NGOs which can approach the UN human rights bodies have limited access to those with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To get a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SOC, NGOs are required to meet various conditions. However, this situation alienates national or regional NGOs from the UN human rights bodies and procedures. These NGOs cannot afford to meet the conditions to get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because of financial and human resource constraints, although they work in the nations whose frequent human rights violations draw attention of the UN human rights bodies. This situation prevents the most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on the certain state from being delivered to the UN human rights bodies and procedures. Moreover, the UN human rights actions on a certain state are discussed only at the UN level, but are not known to the people and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working in the concerned state.

Therefore, with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participation and the role of NGOs in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categories of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should be enlarged and diversified. For instance, NGOs which only work within a specific state should also be granted consultative status to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deliberations of the UN human rights bodies on their own countries or their areas of concern.

4. Strengthening of the UN Human Rights System in General

A. Special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ach human rights body must be strengthened and the procedures must be improved, but there is also a great need to readjust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and system in general and reinforce their functions. The work of the various human rights bodies that have been too much fragmented must be readjusted in order to contribute more effectively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achieve that end, we support the proposal put forth by the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NGOs to establish a Special International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because we recognize it as a necessary and proper alternative.

The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consider the proposals in the Amnesty International's "Facing Up to the Failures: Proposals for Improv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by the United Nations"(AI Index: IOR 41/16/92) to be very reasonable. We recommend that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in Asia and the Pacific lend their ears to the proposals and make efforts to realize them.

B. The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ICHR)

In order to promote and guarantee human rights globally, the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must be ultimately established. Taking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s a reference, the ICHR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judicial mechanism for resolving human rights concerns in the global context.

The ICHR must be an independent agency composed of human rights experts who are s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based on consideration of geograph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This court must guarantee an individual's right to a hearing and its decisions must be recognized as legally binding. Of course an advisory opinion will also be recogniz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side from verifying violations of rights guaranteed by the ICCPR, the ICESCR, Convention against Torture, Convention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and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of Women, the court must also be able to rule for reparations and recommend other concrete remedies.

This court must also be able to hold criminal jurisdiction on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Finally, this court must have the power to impose sanctions or recommend such measures to the UN or member nations against those nations which ignore the court's decision or continue to seriously violate human rights. Such sanctional measures can include, for example, suspension of the violator's voting right in the UN for a given period of time.

5. Issue of Establishing a Regional Machinery in Asia and the Pacific

A. Various efforts, by the United Nations and NGOs as well, have been made toward a regional inter-governmental human rights machinery in Asia only in vain. Some general reasons often cited for the absence of such machinery are: extreme diversity of race, historical background of each nation, culture and religion; very complex political interests of countries in the region; absence of any general regional organization that could serve as a parental body of human rights machinery; and traditional priority given to social harmony over the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However, the most significant factor of the lack of regional human rights body is that the governments in this area are very reluctant to limit the extent of its sovereignty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they are very much in favor of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The advocacy of human rights has often been deemed a threat to the authoritarian rulings of some governments. Another factor we must think about is the absence of powerful human rights NGOs in this region which will continuously monitor the activities of the regional body, distribute inform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educate and organize public opinion toward better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der these unfavorable circumstances, many of the governments in this region which have filled the list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not expected to agree on establishing a regional human rights body in the foreseeable future.

B. Thus, the first priority must be given to the making of more receptive environments within which Asian governments will pay more attention to and agree on the creation of inter-governmental mechanism aiming at the promotion and enhancement of human rights. Bearing in mind the fact that the number of signatories to the principal human rights conventions is extremely low among the governments in Asia, general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ese conventions will make a common basis for such regional body. In this context, the movement in international, regional as well as domestic level to press all governments in this direction is

necessary and urgently required to accomplish the long term objective of regional mechanism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being severely infringements in this region.

C. Alternative proposal for the regional machinery

(1)The Congress of Asian and the Pacific NGOs for Human Rights

Under the above-mentioned circumstances which seem to be imposing barriers to overcome at present, we would like to propose alternatives to replace the idea of inter-governmental machinery. Continuing the efforts to press Asian governments to take every measure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cluding regional machinery, we all Asian NGOs should be get united and organize ourselves to overcome the barriers. In short, it is clear that we need a powerful non-governmental unity which can work effectively in dealing with general human rights issues in Asia, streamlining the strategy towards both the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mechanisms and assuming the role of regional body until the birth of the inter-governmental machinery. Therefore, we, the NGOs in Korea, hereby appeal to all participant NGOs in the Asia Pacific Conference on Human Rights to study and reach a conclusion to launch the "Congress of Asian and the Pacific NGOs for Human Rights."

(2)The Asia Pacific Resource and Training Center for Human Rights

Not only for the regional activities but also for the access to the international involvement, provision of document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activists in the region should be the top priority. With the help and assistance from the United Nations, amicable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NGOs, the Asia Pacific Resource and Training Center c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D. Short-Term Measures for Long-Term Targets

(1)Research Team for the Regional Machinery

To make our dream for regional human rights machinery,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by all people in the region, come true, the first step that we must and can take is to organize and launch a research team for thorough and comprehensive study to drawing up the draft and arranging the strategy to force the governments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o conclude a multilateral human rights convention to establish a regional machinery. It will consist of distinguished scholars, lawyers and activists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human rights.

(2)Interim Communication Office for the Asia Pacific NGOs Congress

If Asian NGOs could make resolution to establish the 'NGOs Congress', the Interim Communication Office must be set out to manage the issues arising from the different views as to the mandate, function, finance, location of its headquarters, and so on. The Interim Communication Office may be composed of the representatives from each country and will be disbanded with the official inauguration of the 'NGOs Congress'.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 Asia and the Pacific

< Contents >

1.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2. Human Rights in NIEs Development Model
3. Suggestions

1.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1.1 Asia and the Pacific is a world region that has experienced one of the most dramat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changes in the 20th century. It is a region with many different peoples, cultures and religions, and, historically, with little regional communications until very recently.

1.2 Development, in its economic sense only, has been the goal of society for decades, giving little room for those minorities who disagreed. The value of human development was replaced with the merit of increased GNP, the value of competition and efficiency of labour. Material growth became the ideal and exploitation of natural and human resources was justified under the objective of "national development". The objective of "national development", in turn, justified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and autocratic monopoly of decision making. In this regard, vertical structures within both the region and the nation form a coherent whole that has served for static maintenance of existing social order.

1.3 Towards a rapid development, nationalism was joined with remaining feudal ideologies, or discriminatory values as to sex, age, race, family and social status, to form a social hierarchy as a basis of a labour-organizing and development pattern, which, in Japan and NIEs, appear to be strikingly similar.

1.4 Nationalistic authoritarian states in Asia and the Pacific, making full use of the Cold War situation, employed 'accelerated development' plan, which inevitably had to accelerate disintegration of traditional rural communities and uncontrolled urbanization. The economic pla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had to accept the world division of production, which meant the newly developing countries had to import the side-effects of the periphery production, too.

1.5 Expansion of military was seen in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which was also incorporated into the economic structure - defense industries based on heavy and electronic industries. Tension from a possibility of war and military exercises were often mobilized when the developmental strategy is seriously challenged.

1.6 Other side-effects, in social phenomena, included massive exploitation of young unskilled workers, industrial diseases, environmental pollution, disoriented mass commercial culture, problems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such as housing, health, education, family relations, prostitution, transportation, etc.

1.7 The accelerated development model, however, was not successful in that it could not narrow the gap between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Rather, trades and division of production within this region have taken more and more a structured form with a few countries at the center and the others in the periphery. A "successful" economy like the South Korea's has also come to a serious structural crisis.

1.8 The continued unequal development in this region stimulated massive migration of labour from the poorest countries and distorted form of trades such as sex-tourism and child export.

1.9 Thus, in short, colonial economy and subsequent foreign dependency, wars, the Cold War and intervention of super-powers, militarization with strong nationalism, remaining values of feudalism, and rapid industrialization have been incorporated into a model of development prevailing in many Asian countries.

1.10 In this regard, it is worthy to reconsider the position of Japan in shaping the development patterns in Asia and the Pacific. Compared to other regions in the world, Asia and the Pacific is highly vertical in its economic relation to Japan. The historical role of Japan onto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befor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annot be easily ignored in terms of a prospect of more equal partnership in the regional economy, given the social and economic basis formulated during the dark period. The post-war settlement within and without Japan was far from just and adequate, as clearly shown in the recent case of sexual slavery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Army.

2. Human Rights in NIEs Development Model

2.1 The Asia-Pacific is the only World Region where no regional human rights treaties exist yet. It is also a region battered with severe violations of human rights from numerous wars, state-emergency measures, internal security controls, developmental authoritarianism, extra-judiciary executions, unidentified disappearances, forced labour, massive migration of labour, forced prostitution, rapid and over-urbanization, to name a few.

2.2 The most common fo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n be identified as having relation with development strategy and accordingly state autocracy. The general lack of public awareness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basic freedoms should also be accounted to the deficiency of proper human rights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primarily a duty of a state.

2.3 Education in this development strategy has been largely a simple state-machinery with many aspects totally against the idea of human development. Elite selective competition, lack of proper facilities, incorporation of ideological and military training, emphasis on feudal values, ignora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emphasis on technical programs, corruption, lack of autonomy on the side of teachers, and discrimination according to financial and other status have been its symptoms. Youth as a whole became its direct victims.

2.4 In most cases, the formation of cheap labour through massive displacement of rural population and consequent deterioration of self-sustaining agricultural economy proceeded without consent of rural communities. Instead, land has become a source of profitable investment due to developmental inflation phenomenon, which in turn intensified the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Weakness of rural communities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often made a country vulnerable to foreign intervention such as open-market pressure for agricultural products.

2.5 Industrial workers are also subordinated by deprivation of their basic rights. Co-determination was considered as undesirable or dangerous idea in front of national development. Such an objective-oriented exploitation of workers naturally resulted in social contempt or bias against workers, their cultural alienation, massive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2.6 Women, children, and other minorities have become the most victimized social group in front of the nationalistic authoritarian situation that usually made use of feudal discriminatory thinking of in the society.

2.7 Militarism, especially, develops a special attitude towards women and the youth as well as a favor of resorting to violence instead of conversation. Hasty identification of 'enemy' or 'dangerous' elements to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consequent irrational hatred become a part of social trend, leading to a ruthless deprivation of basic rights of political minorities.

2.8 Human rights groups and grass-root development organizations also

became victims. They fell under state oppression when they claimed the right to development of the ordinary people, usually implying the rights to sustain a basic life - minimum wage, least housing, saf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protection from illegal executions, etc. Human rights advocacy in Asia and the Pacific has often been an advocacy of minimum living standards.

2.9 Even the success of South Korea symbolizes a typical development path in Asia, as it obviously needed a high degree of state control, surveillance, and threats under the pretext of the Cold War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mmense expansion of the military, sending troops to overseas (Vietnam), social mobilization through strong nationalism, urge for workers' sacrifice and emphasis on women's traditional role. Such a social cost has been often hidden and ignored. Easily taken too is how long the aftermath of such an outspoken violations of human rights can last. Likewise, if such an "accelerated development model" is failing, underlying it is strong social and political dynamics, apart from the economic factors, such as explosive resistance of the people or distrust of the state by its own constituency.

3. Recommendation

3.1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to be held in Vienna in June 1993, deserves much expectation as well as some worries on its success. However, looking at the numerous atrocities happening around the world today, its timely gathering should signify an important moment to consider upon new ideas and rules to form a better world order today.

3.2 In spite of the numerous codification of human rights,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and indivisibility in those instruments should be strongly advocated and especially emphasized in Asian context. From this, we should go further as to overcoming the present difficulties and ineffectiveness of the UN instruments.

3.3 As in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41/128 of 4 December 1986, we understand that a genuine development should be a human development

oriented social progress rather than a simple expansion of national material wealth. At the same time, today's world demands more and more a new paradigm of progress.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and mass dumping has proven itself as destructive to mankind. Thus, we strongly uphol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compatible development model (HRCDM)".

3.4 Reconfirming, especially in the Asian context, the universality and indivisibility of human rights and basic freedoms as stated in the UN human rights instruments, we recommend that any un-balanced emphasis on social, economic conditions as prerequisites to guarantee human rights in a society or any ungrounded distortion of human rights as related to one specific region or civilization of the world should be immediately discarded. As we find such a claim usually come from a political incentive to benefit from maintaining the existing inequalities of the society, we accordingly note that if one would identify a negative effect caused by the ga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he would come to see it as a result of foreign dominance mediated and intensified through the existing unjust social structure of a nation.

3.5 However, we identify the prevailing development model in Asia and the Pacific is still a national development with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We also identify that pursuing this model the nation-state itself has become the most powerful and over-developed actor as well as the cause of many human rights violations. We find the primary victims of this process as ethnic minorities, women, children, displaced rural population, industrial workers, and political dissidents. From this finding, we advocate that the sole initiative of nation-states in this region must be transformed into diversified initiatives of different civil groups - human rights groups as one. "Less State and More Civilian Actions" will help improve the situa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and the Pacific. This will in turn be a basis to work on HRCDM.

3.6 HRCDM, as a new paradigm, requires full recognition and promotion of civil-political rights as well as social-economic-cultural rights. This in turn concretely requires in Asia and the Pacific an end to the Cold War ideologies and subsequent contraction of state machineries

as well as independence from foreign intervention, participatory democracy, human rights concerns, environmental concerns, change of educational system, a re-set of the speed of development, and co-determine principle in all social and economic fields. However, as clearly shown in the Rio Conference on environment, few of serious problems of the world today can be solved with the present inequality of the North and the South. Thus, HRCDM, in a direct criticism to the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and mass dumping, should also be a paradigm to restructure the gap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3.7 As military expenditure is commonly a great burden of development and peace for Asian countries, a regional or sub-regional peace pact is needed in order to decrease the militarization level in this region, with possible coordination of the UN bodies. Demilitarization, abolition of large scale military exercises and peace treaties should be recognized as a vit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 for a HRCDM of both national and regional level. We, therefore, recommend a regional monitoring body for the level of militarization, military exercises and arms trade.

3.8 We believe the first step for a change in Asia and the Pacific is to set up a governmental and a non-governmental regional structure on human rights that will work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relation with development in the region. The governments in the region should agree at least to take the duty of proper and wid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ir legal implications.

3.9 We also suggest the Principle of Co-determination be a working principle of the HRCDM, because it is seen as a vital factor for participatory democracy from the above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patterns and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region. Co-determination is sharing decision making process between different constituencies within a society, including both strong and weak nations of a region.

3.10 We wish that the above 9 points (3.1 - 3.9) be used and incorporated in the discussion of NGO forum and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Recommendations for Bangkok Declaration

The objectives of the upcoming Asia-Pacific Human Rights Conference are to reaffirm the values regarding human dignity and to come up with ways to overcome the limits and obstacles of the existing UN human rights mechanisms and activities.

Korea NGOs' Network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KONUHC) would like to see the following suggestions included in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Asia Pacific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Bangkok.

1. Reaffirmation of General Principles on Human Right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universality and indivisibility of human rights should be reaffirmed and emphasized. The selectiv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standards must be objected. The fact that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re root iss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be affirmed and the UN human rights activities must focus on root problems more seriously.

2. Suggestion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UN Human Rights Mechanisms.

We call for the improvement in sharing of the powers amongst the state parties and also urge the redoubling of efforts to reform the existing UN structure for the better communications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rojects carried out by the specialized agencies of human rights within the UN.

We call for the ratification of all the basic human rights Conventions by all states without reservation.

We call for the adoption of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and procedures to urge all states to withdraw already declared reservations.

We call for the reinforcement of direct and effective education and publicity programs and the UN human rights activities.

We call for the enlargement of the NGOs' participation and role in every level of human rights mechanisms in the UN as well as the enlargement of NGOs'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We call for the appointment of the Special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s proposed by other NGOs to coordinate and strengthen UN human rights mechanisms and activities.

We call for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safeguarding the implementation of Conventions and equipped with authority to consider and decide on the complaints by the individuals.

We call for the sincere efforts by the member governments to secure all necessary resources required for the improvement of UN human rights mechanisms and activities.

3. Proposal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sia and the Pacific

We call for the sincere efforts, on the part of all governments in the region, to adopt an Asia Pacific Human Rights Declaration and, on the basis of this declaration, to set up a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for Asia and the Pacific.

We call for the repeal of all legislations that restrict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der the pretext of national (or internal) security of each country.

We call for setting up of an investigatory agency and/or a tribunal on human rights abus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of Imperial Japan during the World War 2 such as in the case "comfort women."

We call for a series of review of the current moves toward Japan's acquiring a permanent membership in the UN Security Council, especially regarding Japan's unsolved liabilities of the wartime atrocities.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의장.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고문받지 않을 권리, 자의 적체포와 구금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안전과 자유의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사람들은 비판할 권리와 자신들의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의 의한 인권침해는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가 존재하는 아시아의 나라들에서조차 계속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

이러한 법률은 세계인권선언, 시민권 정치권 국제규약,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와 처벌 방지조약과 같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국가차원의 법률, 조치, 지침 등으로 국제인권규약들을 위반하는 정부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도

록 유엔 세계인권대회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위에서 언급된 법률들을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폐지할 것과, 정치범의 즉각 석방 등 이러한 법률에 따라 자행된 일체의 잘못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요 인권조약을 비준할 것과 비준에 관한 모든 유보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